



대 상

이 경혜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생각을 바꾸면 정책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복지!"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 이원화시스템, 〈장애인바우처콜택시〉제도



추진기간

| 이 경 혜 의원 |

2010년 10월 ~ 2013년 10월

사례유형

정책연구기능

정책 개요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 이원화시스템,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제도는 교통약자, 특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기존의 획일적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 즉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특수설비차량을, 비휠체어장애인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지원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사회자원인 영업용 택시를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 정책의 핵심이자 성공 포인트이다.

차량 부족과 고질 민원 해결, 엄청난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 압박해소,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 등 1석 5조의 획기적 성과이다.

이 제도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 도입 배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특수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특수차량인 두리발 100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민원과 집회 시위가 계속되었고, 또한 특수차량 구입과 운영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압박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그래서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차량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경혜 의원은 2011년 10월 부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부산은 배리어프리, 즉 장애물 없는 안전한 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교통분야의 장애물 없애기', 즉 이동권지원현황에 대해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대안으로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는 〈장애인바우처콜택시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부산시가 적극 받아들여〈장애인바우처콜택시〉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이경혜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까지 마련했다.

정책 내용과 추진 과정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일반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장애인바우처콜택시제〉를 도입,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제대로 된 ㄴ맞춤형 복지서비스모델 개발.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등 일반적인 이동수단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교통약자, 특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책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산시도 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2006년부터 운행하고 있고, 현재 100대가 운행 중이다.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는 휠체어장애인뿐 아니라 비휠체어 장애유형인 시각, 신장, 발달 장애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본 정책은 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기존의 획일적인 특수차량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용 특수설비 차량을, 비휠체어장애인은 장애로 인 한 교통비 부담. 즉 택시 이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지원시스템을 이원화'했다.

특별교통수단을 기존의 두리발과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이원화해, 특수차량인 두리발은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운영하고, 특수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장애인들은 시가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지정한 일반 영업용 택시를 두리발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일반 요금과의 차액은 전산 입력되어 시가 택시업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이원화이다.

또한 정책의 큰 특징은 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 숫자가 많은 일반 영업용 택시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

2012년 200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4월 20일부터 서비스질이 담보되는 영업용 브랜드 콜택시 중 1290대를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활용, 13억 6000만원 예산(8개월분)으로 시각·신장·발달 장애인 1만 3503명에게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억 예산으로 차량을 1500대로 늘리고, 1~2급 비휠체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두리발에서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책의 성과와 보람: 1석 5조의 획기적 성과!

본격 시행 5개월 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차량부족에 따른 고질적 민원을 완전 해소했다.

일반 영업용 택시 무려 1290대가 특별교통수단의 하나로 투입되면서 차량의 절대부족에 따라 '하늘의 별따기, 복권당첨'으로 표현되는 예약 어려움, 배차지연으로 인한 평균 40~80분이던 긴 대기시간 등 이용 불편과 만성적인 민원이 대폭 해소되었다

2013년 9월 기준, 바우처콜택시 1일 평균 이용건수가 960건이고, 두리발은 648건으로 나타났다.

비휠체어장애인은 바우처콜택시를 이용하고, 두리발이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운행되므로 해서 고가인 특수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휠체어장애인의 두리발 이용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결과 두리발 차량부족 문제 역시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몸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던 두리발 증차 요구 집회 · 시위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둘째, 차량확보로 서비스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숫자가 많은 일반택시를 활용함으로써, 그 동안 차량부족을 이유로 이용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6680명까지 대상으로 포함, 특별교통수단 전체 이용대상자가 2만 3313명에서 2만 9993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이동권에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셋째, 맞춤형 차량지원으로 서비스질 개선, 이용자만족도가 높아졌다.

그 동안 요금혜택의 이유 때문에 승합차형 특수차량인 두리발을 이용하면서 승하차 등에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던 시각·신장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한 차종(승용차형 택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

2014년부터는, 두리발의 차체가 높아 승하차시 불편을 넘어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 미사용자 6867명도 승용차형 바우처콜택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더욱 편안하고 안전 한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넷째. 예산절감 및 예산효율성이 극대화됐다.

기존의 사회 인프라인 영업용 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냈다.

장애인바우처콜택시 확대시행 5개월인 2013년 9월 기준, 1일 평균 이용건수는 960건. 이는 같은 기간 두리발 648건의 약 1.5배에 달하는 실적이며, 두리발 136대 증차 효과에 해당한다. 연간 운영비에 있어 매년 34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두리발 136대 증차운행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 54억 4000만원(대당 4000만원)과 매년 연간운영비 54억 4000만원(대당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우처콜택시는 기존의 일반 영업용택시를 활용하므로 차량구입비는 0원이고, 연간운영비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볼 때 20억원이 소요된다. 즉, 차량구입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34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 영업용 택시를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교통비(택시요금)지원이라는 직접서비스에만 예산이 투입되므로 차량구입, 보험가입, 콜센터운영 등 기타 요인에 대한 재정누수를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택시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영업용콜택시는 평소 일반영업를 하면서 장애인콜도 병행하게 되므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가 고정고객확보를 통해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한다.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제도에 대한 부산장애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 두리발과 장애인바우처콜택시 비교 〉

7-1		대수		예산(백만원)	1일 평균이용	1회 소요예산	
^1	차종		계	운영비	차량구입비	(2013.9월)(건)	1외 조표에진
두리발	스타렉스	100	7,800	3,900	3,900	648	15,710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택시	1,290	1,360 (8개월분)	1,360 (8개월분)	_	960	6,200

- · 이렇게 제 꿈에 '날개'가 되어 준 '장애인바우처콜택시!'.
- 이경혜 선생님, 저 뿐만 아닌 모든 장애인들의 날개인 '장애인바우처콜택시'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부산시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부산에만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가 다른 지역에도 생겨나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저처럼 꿈을 이루기 위한 날개가 돼 주기를 바랬답니다.
- 정복연(시각장애인 1급, 35세 여,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 ·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아버지가 투석보다 병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더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투석생활인데 이렇게 신장장애인을 위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 바우처콜택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박○○(출처: 2013, 9, 13,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 · 저 같은 하체, 상체 장애인과 움직임이 둔한 뇌병변장애인도 두리발의 높은 승, 하차 상태에서는 이용 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3사의 콜택시가 대거 증차가 되었으니 상하체 중증과 뇌 병변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출처 : 2013, 5, 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 · "귀하는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콜택시 도입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 므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합니다."
 - 2013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부산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안성태 주무관,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 " 이 제도는 반드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운	운행대수(대)		100	80	122	55	35	24
법	정대수(대)	390	187	141	145	80	82	53
총사업비	'12년	25,900	3,900	4,476	7,368	3,000	3,000	1,331
(백만원)	'13년	32,449	3,900	5,200	8,942	4,500	3,200	1,743
1대당 -	운영비(백만원)	90	40	48	57.8	60.8	36	40
법정대수 운영시 연간 예산 (차량구입비 제외) (백만원)		35,100	7,480	6,768	8,381	4,864	2,952	2,120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등 타 시도로부터 정책문의 쇄도. (울산은 부산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시행 중) 서울 박원순 시장이 "부산에 아주 좋은 장애인교통정책이 있다는데, 잘 알아보라" 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정책 발전 방향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차량부족과 과도한 예산부담은 전국 공통의 문제점이며, 설사 막대한 예산을 투입, 법정대수를 운행한다 해도 예약의 어려움과 긴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맞춤형 이동 복지서비스 모델인 부산의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의 법 개정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번 위민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정책의 타당성과 그 우수함이 검증되고,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진정한 맞춤형 이동권을 보장받고, 또한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무리 글: 이경혜 의정활동

조례 대표발의 16건. 시정질의 4회. 5분자유발언 10회.

이경혜는

- · '사회약자 중의 사회약자', '사각지대 안의 더 사각지대'를 살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정 한 서민일꾼으로 자부한다.
- · 정책전문가 의원으로서. 정책개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 · 다양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지방의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제도를 끌어내는 상향식 정치, 지방분권시대의 전략가이다
- 오늘 소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원화시스템',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제도〉역시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 · 정확한 문제제기와 함께 반드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한다.

철저한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열정으로,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자이자 동시에 행정의 동반자'로서 '시의원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시의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경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할 것이다.



최우수상

이 용 범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Ⅰ이용범의원Ⅰ

추진기간

2010년 7월 ~ 2013 11월

사례유형

주민참여

추진동기 및 배경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배려해야 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방법으로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생활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을 둔 가족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인천시 장애인 전체 현황은 13만 3000여 명이며,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2만 8000여 명이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인천시 장애인빙상연맹을 맡아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 장애인에게 관심과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공약사항에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기간 중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추진내용

당선되어 가장 먼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선택하고, 가장 먼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있는 소규모의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의 판로를 개척했다.

인천광역의회

다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가족을 대신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 등을 지원, 가족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족 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로써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활성화되도록 '인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다양한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2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시에 "인천지하철 편의시설과 승하차 개선의 필요성"을 동영 상과 함께 준비하여 중증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 사항을 각인시켰으며,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 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2013 인천시 편의시설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 선의 필요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추진사항

- · 조례발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2010, 10, 04)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2010.11.19)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발의(2011.09.01)
- · 집행부 견제를 위한 시정질문
- 인천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시정질문(2013,09,09)
- 《주요내용: 인천 지하철 편의시설과 승하차 개선의 필요성 제기》
- 지하철 담당부서인 교통공사로부터 답변 제출받음(2013.09.30)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시정하겠음》
- · 장애인 단체 주관 행사 참석
- 장애인 단체장과의 간담회(2011.02.08)
-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인천편의시설 확충방안 토론회 참석(2013.10.18)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과 개선 필요성" 강조》

강조하고 싶은 점

인천시에 있는 많은 장애인 관련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고충을 듣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인천 지하철 편의시설과 승하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방영하면서, 시 의원 및 집행부뿐만 아니라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진(기대) 성과

인천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실태를 동영상을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로써 인천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위의 도시에 이어,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로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따뜻하고 배려있는 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6대 인천광역시의원에 출마하기로 다짐하면서부터 공약으로 우리 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큰 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지하철에 대한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 집행부로부터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인정의 대가로 2012년 매니페스토 광역의원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 산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매우 아쉬운 현실이라 생각한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물론,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하철 편의시설 불편사항이 개선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수상

33명





우수상

33명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 및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구매 현황 조사



| 김 기 옥 의원 |

추진기간

2011년 4월 13일 ~ 2012년 7월 12일(1년 3개월) 및 2010년 7월 ~ 2012년 6월(2년)

사례유형

지방행정 비리의혹 규명 및 제도개선

[사례1]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서울시특위활동을 통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허가 비리 규명

특위구성 및 경과

- 2011.2.25 : 김기옥 의원 주도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가결)
- 2011.4.13 :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2인을 선임
- 2011.4.28 : 민주당 김기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
- 2011.5.2 : 제230회 제4차 본회의는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회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받고 원안대로 승인
- 2011.10.12 : 제234회 제3차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차 연장 승인
- 2012.2.27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

조사의 목적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The Pinetree Condo & Spa'는 국립공원 북한산에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고층의 호화콘도가 들어서기에는 곤란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컨벤션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취지만으로 북한산 콘도 시설계획·건설을 엄격히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등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와 재량권의 남용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조사도 있었던 바, 북한산 콘도 시설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협의·심의,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 분양과 관련된 절차, 그 밖에 이 사업을 둘러싼 일체의 내용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하여 규명했다.

조사기간

2011년 4월 13일 ~ 2012년 7월 12일(1년 3개월)

조사범위

- 북한산 콘도 시설사업 관련 협의, 심의, 인허가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일련의 과정
- 북한산 콘도 시설계획, 분양계획 등 시설사업 관련 계획이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
-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자문 · 심의 과정
- 유원지 · 공원 및 최고고도지구 관리실태
- 북한산 콘도 시설사업으로 인한 인접 북한산국립공원 및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무중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 중 북한산 콘도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소(4본부, 2국, 1사업본부) (도시계획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안전본부, 맑은환경본부, 도시 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관계기관: 강북구청
- 증인 및 참고인: 증인(39명), 참고인(10명)

비위적발로 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절차상 하자 문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 1. 사업지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4만 5000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건축

허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전 관계법 절차에 따라 우선 정리한 후 후속절차가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인허가를 해준 행위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로 여겨지는 바, 서울시 및 강북구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협의절차를 면밀히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것

- 2. 도시계획시설인 우이유원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현행 법규상 유원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게 유원지 시설 규모 축소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한 것은 위법의 논란이 명백하고, 면밀한 법률검토 없이 관련 인허가 심의 절차를 이행한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계한 서울시 및 관계공무원은 문책하고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것
- 3. 유원지 기능복원 등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현행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적정 밀도와 시설 배치로 현재와 같은 논란을 최소화할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서울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및 향후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
- 4.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된 분양계획안에 따르면 100% 공유제(분양제)로만 계획하고 있었고, 54평 이상의 대형평형 위주의 건축계획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주택(아파트)처럼 특정인에게 사용케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며, 이는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광진흥법」입법목적에 맞게 분양제와 회원제를 고루 배분하여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지도감독의 의무를 지닌 서울시장(관광과장)은 각각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계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
- 5. 허위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토대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허위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사전에 확인 시정조치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사실 확인 추가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졸속 처리 등 특혜의혹 추가감사 및 조사요구에 관한 사항
- 6. 2006. 11월 우이유원지 시설 전 소유주로부터 제안되어 강북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 자문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요청안에 대하여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현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을 지원할 목적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일련의 과정을 추가조사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것
- 7.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유원지 시설 중 대부분을 휴양시설인 숙박시설로 허가한 것은 유원지 시설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합리적인

협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 안된 것은 위원회 심의가 졸속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반증하며,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바 심의위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관계인에 대하 여 감사 및 조사 등 추가조사를 요구함

- ※ 특별위원회에서 2012.2.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2012.2.29 본회의에서 의결됨: 2008년 10월 22일 당시 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 중인 6명을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해촉할 것을 촉구
- 8. 우이유원지는 국립공원 인접지이고, 15미터 이상 도로에 24미터만 접한 토지임을 감안할 때 유원지 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비도시계획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층수를 5층에서 최대 2개 층을 완화한 7층까지 허용토록 심의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바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 및 조사를 요구했다.
- 관리 감독 부실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9.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전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우이유원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내외에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승인 전 사전분양 의혹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강북구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 수집도 없이 검찰고발조치만을 행한 것은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10. 사업시행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확정)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물론 관광숙 박업 등록이 불가함을 명심하여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
- 11. 북한산 콘도 개발 중지 및 사업승인 취소가 어려워 사업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것

서울시의 관련 후속처리 경위 및 결과

- 추진경과
- 2011.2.15 : 콘도 사전분양 관련 시행사 수사의뢰(서울시→북부지검)
- 시행사 대표 등 관련자 2명 구속(2011.6.10)
- 2011.12.8~12.30 : 시 자체감사 실시(1차)
- 강북구 도시계획입안 및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과정 다수 미흡한 사항 지적
- 2012.1.30~3.9 : 시 자체감사 실시(2차)
- 감사관 직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교수 3, 건축사 1, 시민옴부즈만 2명)
- 2012.3.26 : 2차 조사결과 시장단 보고(감사관실)
- 직원 현장교육, 직원신분상 조치, 향후대책 등 마련 지시

- 2012.5 :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조사 감사백서 발간(서울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 감사관실 조사결과 조치계획

〈행정상 조치〉

- 북한산콘도 조사결과를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유사 비리사항이나 잘못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 시의회 북한산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결과 제출 및 설명

〈업무개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인 · 허가 승인조건에 포함하는 방안검토

〈신분상 조치:총 31명〉

북한산콘도 난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나 심의과정에서 업무소홀이나 비리가 적출된 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

〈훈계:16명〉

- 위반행위 발생시점이 2006.12~2009.2로 징계시효(2년)가 경과되어 '훈계'처리
- ※ 중대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효경과로 '훈계처리'하는 불합리함을 이유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징계시효 연장을 건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가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강화)됨

[사례명2]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비리 밝혀

경 과

- 2010.7 : 시의원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하게 됨
- 2010.10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투입 규모가 수천 억원대에 달하여 시립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자료요구 시작
- 2011.6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문제점 제기
- 2011.11 :약 1년여 동안 수백 건의 시립병원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 적시하여 밝혀냄
- 2011.12 :서울시가 시 산하 시립병원들에 대한 단 5일간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본 의원이 적시한 비위사실들을 모두 밝혀냄
- 2012.6 :서울시가 산하 시립병원 비위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개선대책 발표

문제점 적시하여 서울시에 감사요구

•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 의료장비 구매 예정가격 유출의혹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 2010.1.1 이후, 의료장비 구매계약(총8811건/527억 원) 중 낙찰률 99% 이상이 28.2%로 광범위한 '예정가 유출'의혹 제기

서울시 위탁병원인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등은 2010년 1월 1일 이후 8811건 527억 4500만원의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예정가격의 100% 낙찰금액이 15.9%인 1174건 84억 600만원이며, 99%이상은 28 2%인 2938건 148억 7600만원에 달하다

이는 "입찰 및 수의계약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1조)는 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예정가격을 유출한 의혹이 짙으며,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

서울시가 전문성 없는 계약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예규를 승인해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으로 하여금 계약의 전문성도 없는 한 벤처기업에 의료장비 구매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및회계 예규'를 승인해줬고, 이를 바탕으로 산하 시립병원들이 이 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의료장비를 구매해왔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일부 시립병원과 소속직원들은 바로 그 구매위탁 대행업체에 주식투자(지분참여)중이다. 공정성을 가장한 형식적인 위탁계약 중지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등과 구매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시중가보다 고가 구매 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무려 8811건 527억 4500만원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시중가격과 비교할 그 어떤 비교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공정성을 가장한 형식적인 위탁계약임을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2010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 계약할 경우,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941건 273억 5000만원의 의료장비를 구매계약하면서 서울시 계약심사과(課)의 계약심사도 받지 않은 채 병원 자체 심사에 그쳤다.

위 사례들의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산 콘도개발 조사특위 활동 기간 중 수차례 전화를 통한 살해 협박과 위협이 있었으며, 서울시장을 동행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 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병원들의 문제를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장비 구매관련 비위 사실들을 밝히려 하자 병원들과 의료장비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무법인을 내세워 위협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음을 밝힌다.

영등포구 양평동 15만 4000V 고압 '당목송전선로 및 송전탑'지중화사업 추진



Ⅰ김정태의원Ⅰ

추진기간

2010년 7월 ~ 2013년 12월

사례유형

공약 실천 추진사례

추진동기 및 배경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압 송전탑' 갈등은 경남 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고압 송전 선 지중화율은 평균 88.2%이지만, 가공선로를 지지하는 15만 4000V 고압 송전탑 195기 중 주택가 등 생활현장과 가까운 송전탑일수록 해묵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영등포구 양평2동 양평6가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당목 송전선'도 그중의 한 곳이다. '당목 송전선'은 당인리 발전소에서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15만 4000V 고압 송전선으로, 한강과 안양천 사이에 양평6가 구간만 유일하게 지상 가공(架空)선로로 존치되어 왔다. 이 구간의 가공 송전선는 3개의 송전탑(4, 5, 6번 철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중 5번과 6번 송전탑 사이 310여m의 가공송전선이 덕양, 유성, 동도연립주택 등의 주택가 지붕 위를 관통하는 동시에, 210세대가 거주하는 한솔아파트 창문 옆 50여m를 지나고 있었다. 4번과 5번 송전탑 역시 주택지역과 40여m 거리에 불과하고, 근린체육공원 위를 지나고 있다. 이 고압송전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의 건강 위해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지역 낙후화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단골 선거공약이 되었으나 이루지 못한 영등포구 지역의 25년 장기 민원사업이자 숙원사업이 되어 왔다.

추진내용

오래된 민원일수록 그만큼 해결방안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압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여러 행정기

서울특별시의회

관이 관련되어 있고, 「전기사업법」과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의 공동 분담을 하게 되어있어, 자치구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17개 공약사업 추진계획 중 가장 이행 난이도가 복잡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송전탑 이설 집단소송'→김영주 국회의원의 '당목 송전선 및 송전탑 지중화계획 견인'→지자체의 인허가 지연→한전의 '사업 중단선언'으로 이어지는 '당목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중단원인을 집중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1) '고압 송전선'의 지중화 이설사업 중단원인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첫 번째는 한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했다. 한전은 2007년도에는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았지만 2008년 초 국제유가 인상 등의 원인으로 점차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2007년 전기료 인상안이 무산되자,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송전선 및 배전선 지중화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급기야 2008년도 2조 6525억원의 영업적자(한전은 2013년 올해까지 6년 연속 당기수익 적자를 보이고 있다)를 이유로 2009년 1월 일체의 지중화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지중화계획 추진을 위한 유인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한전의 의지 견인은 소요예산 확보 이외에도 지중화사업의 승인, 이설공사 수행이 모두 한전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안양천의 관리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해당 3기의 고압 송전탑이 모두 한강과 안양천 제방에 위치한 '당목 송전선'의 지중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방을 굴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09년 4월 「하천법」이 개정되어 제방 관리가 더욱 엄격해져 반드시 넘어야 할 관건이 되었다.

세 번째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 신청권한을 가진 영등포구의 확실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도로굴착 승인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조체제도 구축되어야 했다. 2007년 한전의 '지중화계획 수립' 이후 영등포구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만 있었다면 가능하였기에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확실한 보장책이 있어야 했다.

네 번째는 20억원 가량 소요되는 자치구 분담금에 대한 확보책이었다. 영등포구의 확실한 의지확보를 위해서도 예산 확보책이 더없이 절실하였다.

2) '고압 송전선'의 지중화 이설사업 추진전략 모색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전략을 찾았다. 법령개정에서부터 지중화사업의 책임주체로 광역 지자체, 즉 서울시를 의무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세부내용이 중앙정부 고시로 규정되어 권한이 제한된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유일한 방법은 영등포구(갑)지역위원회의 공동대응과 노력 밖에 없다고 보았다.

마침 2010년 6.2 지방선거 직후부터 김영주 위원장의 주도로 영등포구(갑)지역위원회 소속 서울시의 원, 구의원이 참가하는 정책회의를 정례화했다. 이 '정책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을 펼치기로 했다.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목요일 오전8시에 개최되는 '목요정책회의'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중화사업은 김정태 서울시의원의 공약 이행활동이라기보다 김영주 국회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윤준용 영등포구의원의 전방위 활동의 공동성과 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당목 송전선'의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한전의 사업의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행히 2005년 사법부의 판결로 지중화 사업의 당위성 확보라는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효했다.

2010년 7월 서울시의회 등원 후 먼저 '송전탑 이설요구'소송을 주도했던 윤영동 전 통장연합회장을 만나 당시의 소송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를 마쳤다. 이어 2007년 한전으로부터 '지중화계획'을 얻어냈던 김영주 위원장과 윤준영 구의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나섰다. '당목송전선' 지중화 이설사업의 확실한 당위성과 함께 2010년 9월 3.9%의 전기료 인상으로 시작된 한전의 대 국민 설득국면을 적극 활용하였다.

먼저 2010년 9월 당시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이 구의회 차원에서 한전 남서울본부 건설 사업소를 방문하여, 조속한 지중화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답변은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 다.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단독, 또는 당협 차원에서, 영등포구 관계 공무원 등과 8차에 걸쳐 한전 남서울본부 및 본사 개발사업본부와 연쇄접촉을 통해 지중화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드디어 2011년 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 및 서울시의 인허가 협조를 전제로 3월내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약속 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쉽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공약 이행이 한전 계획안의 전모를 파악한 순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의 인허가 심의 협조요청 과정에서 알게 된 당초 한전의 사업계획은 주민의 기대와는 다른 반쪽 사업임을 밝혀낸 것이다. 즉 한전의 기존 사업계획은 4~5번 송전탑을 연결하는 가공선로는 그대로 둔 채, 5~6번 송전탑 사이의 송전선만 지중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6번과 7번 송전탑은 우회 확대되어 한솔아파트 주민의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2월부터 4월까지 당초 계획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의원의 대안은 4번에서 6번 송전탑까지 전 구간을 지중화하고, 특히 5~6번 송전탑 연결 선로의 지중이설은 한솔아파트 앞길을 통해 매립하고, 이어 터널 굴착을 통해 서부간선도로를 지나 안양천 양측 제방의 최단 거리만 가공선로를 유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기존 예산보다 2.5배가 중가되어 한전과 영등포구청은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안은 안양천 제방에 위치한 기존 7번 송전탑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재가설 허가를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서울시의원의 자격으로는 국토관리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김영주 당협위원장의 소개로 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상임위 소속인 강기정 국회의원실 주선을 받아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을 비롯

하여 과장, 팀장을 연속으로 접촉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국토관 리천 하천국 안양천 관리팀의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도로정 책과와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서울시 관리도로 굴착하가에 대한 협조는 얻어 놓은 상태였다.

2011년 4월 16일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본 의원의 주관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전 건설처, 서울국토관리청, 영등포구 도시국 등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협조가 없었던 타당 지역협의회의 방해 작업이 일어났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는 지역 당협 간의 경쟁과 견제가 존재한다. 2007년 지중화 이설사업이 중단된 것도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타당 소속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비협조와 견제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국토관리청과 한전 담당자에게 기존 계획의 변경의 당위성과 안양천 제방 내 송전탑 재설치 필요성을 설득하는 가운데 타당 당원의 방해책동은 주민간의 충돌로 번졌고, 결국 한전의 기존 안으로 고착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당시 타당 국회의원 측 논리는 "기존 계획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야지 대안 수립과정에서 또다시 중단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여기에 예산이 보다 적게 투입되는 기존안을 고수하던 한전과 영등포구청의 묵시적인 동조로 '반쪽 지중화 공사'가 착수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4일 전기공급설비계획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전력 과수요기 여름과 겨울을 지나 2012년 2월부터 본격인 공사에 진행되어, 3월 하순 가공선로와 지중매설선로를 연결하는 강관주 송전탑이 탑이 새롭게 조립되고 있었다.

철거한다든 송전탑 자리에 기존 송전철탑보다 더 큰 규모의 강관주 송전탑이 설치되자, 지역주민들의 의구심과 반발이 시작되었다. 본 의원이 이미 예견하여 오랫동안 수정안을 요구하고 협의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반쪽 지중화'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공사 중단

당시는 4.12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4월 초, 한솔아파트 박홍철 입주자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당목 송전선 지중화사업 경위와 의견'에 대한 질의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4월 7일 저녁 긴급 소집된 한솔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진행과정과 한전 지중화 계획의 문제를 설명하고, 선거 이후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4월 12일 선거 후 한솔아파트를 비롯하여 덕양, 유성, 동도연립주택의 주민대표와 두 차례 연석 간담회를 통해 '당목 송전선 반쪽 지중화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주민대표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중화 사업 수정 및 추가 공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본 의원의 요구로 본 의원인 김정태 시의원·윤준용 구의원·한전·영등포구청 관계자가 3회에 걸쳐 지중화사업의 확대를 협의하였으나, 한전의 경영악화에 따른 추가 공사계획에 대한 공식 거부 입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4월 30일 저녁 6시30분 공사중단 및 공사 구간 추가를 위한 주민집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주민의 집단행동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5월 2일 오후 2시부터 5번 송전탑 재설치 운반자재 진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그 날 저녁부터 밤샘농성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샘 농성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주민대표가 함께 했다.

이튿날 오전 10시 영등포구청 소회의실에서 한솔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본 의원, 구의원, 영등포구 도시국장,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건설본부장이 참여한 관계자회의가 열렸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전의 입장으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4) TFT구성을 통한 先분담금 지급·後변제 방식 제안으로 돌파구 마련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왁벽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농성을 함께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5월 7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한전, 영등포구청, 김정태 시의원이 참 여하는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5월 14일 3차 조정회의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 한전의 경우 지중화 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고, 다가 올 전력 과수요기 대비책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 한전은 2012년 9월 15일 블랙아웃 즉 순환정전사태를 불렀고, 원전파동으로 전력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목 송전선'의 경우 지중화 공사를 위해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다. 주민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철 전력공급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한전 측의 추가부담금 재원마련 대책으로 영등포구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 한전이 변제하는 방법 '先확대 後변제'안을 제안하여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의 수락을 얻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의 예산 확보가 문제였다. 1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시에 마련할 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우선 예산이 일시 투입이 아닌 단계적 투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7월에 예정된 영등포구추경편성에 공사착수금 1억원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본 의원의 요청으로 양평로 배전선 지중화사업예산으로 확보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원의 전용을 제안한 후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검토를 약속받아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전달하고, 우선 5~6번 송전탑 사이의 지중매설작업은 계속키로 했다. 5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제안을 수락하여, 29일 김영주 국회의원, 구청장, 한전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결과를 전달하였다. 즉 기존 공사는 재개하고, 여름철 전력비상수급기를 지난 후 추가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당목송전선 및 송전탑 지중화사업 개요도. 한전의 당초 계획에 따라 1차로 5~6번 송전탑 구간의 가공 선로를 지중이설한 후 2차로 4~5번 구간 지중화사업을 관철하여 2013년 12월 최종완공되었다. 한솔아파트 후면을 우회하는 가공선의 문제가 남았지만, 향후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주민을 설득했다. 6월 7일 주민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겸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농성을 해제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제개하였다. 추가 지중화사업은 11월 20일 한전 본사 지중화심의에서 가결되어, 12월 20일 공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는 공사착수준비금 1억원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16억 1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고. 올 4월부터 분야별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강조하고 싶은 점 및 추진(기대) 성과

공약이행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의 집단소송 후속조 치부터 마무리까지 민주당 영등포(갑)지역위원회 김영주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 노력의 결과였다. 특히 본 의원의 한전의 반쪽 지중화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과 방법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 주민과의 소통·신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두 번째 성과는 25년간 지속된 지역민원사업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 주민 건강권 회복이다. 세 번째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지중화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정책대 안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도 큰 보람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과 제언

'당목 송전선 및 송전탑 지중화사업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해보고자한다. 첫째는 민주당 영등포(갑)지역위원회의 공동 대응이다. 매주 '목요정책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서울시의원-구의원이 유기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숙원사업인 고압 가공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이룬 새로운추진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평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정확히 숙지하였고, 한 전의 경영상태와 함께 전력수급 전략 등을 이용하여 지중화 사업에 소극적인 한전을 설득하고 압박을 가한 것이 주효했다.

셋째, 서울시의원이 주민의 요구를 이행하고 주민과 한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조정한점이다. 특히 서울시의원의 노력으로 서울시, 서울국토관리청의 신뢰·협조체제를 기반으로 공기업인한전과 행정기관인 영등포구청, 그리고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로 TF팀 구성을 통한 정책대안을 수립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넷째, 예산확보와 활용의 새로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지중화 사업 신청자인 자치구의 예산을 先확보하여 집행한 후, 한전의 분담금을 後변제 받는 등의 창의적인 방안 제시 역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큰 역할이 되었다.

인권조례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제정



Ⅰ김형태의원Ⅰ

사례 내용

1. 인권 조례 제정의 선봉장

제8대 서울시의회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큰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인권'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들이 발의되었고. 또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제일 먼저, 치열한 찬반논쟁 속에 세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통과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 하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1년 9월 30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 발의안으로 접수된 이 조례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의원들은 강한 반대 표명을 했다. 2011년 12월 16일 교육상임위 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하루에 40~50통에 가까운 문 자메시지. 전화. 이메일이 들어왔다. 이에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언론에 알렸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또 한 반대진영의 사람들과 수차례 토의와 토론을 통해 설득작업도 했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 하여 교육위에서 수정가결(통과)시켰지만 여전히 항의는 계속되었다. 2011년 12월 19일, 교육위를 통과 한 학생인권조례는 본회의장에 상정되었고 찬반논란은 계속되었다. 모든 언론사들은 뜨거운 감자인 이 안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본인은 찬성토론을 하며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조례는 무사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로 자리를 비우자 서울시교육청의 이대영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2년 1월 9일, 재 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 청에 복귀한 후 20일에 재의를 철회했고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다고 공포했으나 이번에는 교 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노 력을 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을 발의 하여 통과시켰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인권만이 아닌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서울특별시의회

고 그들의 자료를 참고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할 때 같이 준비했던 조례였다. 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발의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3일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고, 2월 10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학생과 교원은 학교구성원의 가장중요한 양대 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월 13일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더 나아가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보수적인 교원단체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였고, 이에 2월 13일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을 보도자료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명하였다. 게다가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4월 16일에 공청회를 가졌다

그 후 〈교육위원장 안〉으로 대안(수정안)이 나왔고, 4월 30일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5월 2일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재의를 요구하였고, 6월 20일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권보호조례 재심의를 하였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 재석 94명에 찬성 68명으로 교권보호조례는 재의결되었고, 6월 25일 공포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2012년 7월 27일 대법원에 교권보호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시의회는 8월 6일 교육부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셋째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6월 4일에는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펼쳤다. 그 후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하고 수렴하여, 6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했고 2012년 9월 10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어 9월 28일 공포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통과시켰다. 2012년 4월부터 〈서울시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로 활동하며, 조례안 작성을 위해 5차례의 전체회의와 14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쳤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석한 청책워크샵도 갖고 2달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하였다(실태조사: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1649명, 학부모 789명, 교사 225명,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295명, 인권취약 어린이·청소년 514명). 그 후 2012년 10월 4일 본 조례를 발의했고, 10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배포하였고, 11월 1일에 공포되었다.

그 밖에도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도시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중이며, 2012년 12월 4일에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참석 / 2013년 1월 26일에는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참석 / 2013년 4월 4일에는 학생인권조례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7월 19일에는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 2013년 9월 9일에는 인권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16일, 이지문 시의원이 발의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본인은 공익제보자로서, 고단하고 상처로 얼룩진 삶을 겪어온 사람이다. 양천고등학교 재직시절, 급식 비리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재단에 맞서힘없는 학생들을 대변하고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자'고 바른 소리를 했으나 학교재단은 이를 오히려 눈엣가시로 여겨 보복적 파면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당시 교육청은 축소ㆍ은폐ㆍ부실 감사를 하였고, 검찰(남부지검)은 부패재단에 면죄부를 주었다. 본인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에서 큰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죽음까지도 떠올렸으나 제자들에게 부당함에 무릎 끓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정의와 양심이 끝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모하리만큼 교육 비리와 싸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듯이 13개월 동안 학교 앞, 교육청 앞,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냈다. 진심어린 호소가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2010년 교육의원에 당선이 되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통하는 대한민국은 그제야 양천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재단 이사장을 기소하였고, 서울시교육청도 전면 재감사에 나서 수많은 비리를 적발하였다.

본인의 의정활동 근간에는 공익제보자의 삶이 있다. 억울한 입장에 서봤고 공익제보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약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있던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미 18년 전에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사례를 토대로 2013년 4월 2일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익제보자 단체들의 의견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일부 쟁점사항에서 서울시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조를 얻어냈고 조례를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한분 한분에게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 · 설득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투명도와 청렴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제정되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이 겪었던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었다. 통과된 조례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했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을 강화하였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

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1. 운영의 모범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2. 조례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부산서구 2곳이다. 이번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244개 전국 지자체별로 조례 청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각지대인 교육청 조례를 동시 추진하여야 한다(2013년 7월 말 기준).
- 3.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미비가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산점 등은 법령 미비로 인해 조례에 담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익제보 사각 지대인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준비 중에 있다.

3. 『서울특별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가 상정되고, 통과되었던 시기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전국민의관심이 고조되었던 때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민원에 의해 준비했던 조례로서,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나 시민 모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조례안 처리는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때문에, 신속하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집행부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절충하였고, 결국 원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데,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을 씻어내자는데 이것을 정치적, 당파적으로 보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2013년 8월 2일, 〈학교급식도 방사능오염 식재료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그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조례안에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입장, 시

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8월 26일에는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를 개최했었다. 이 자리에는 조례를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내용을 듣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김형태 의원 대표발의, 9명 공동발의, 찬성 19명), 조례안은 2013년 9월 11일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례의 특징을 보면.

▲ 학교급식에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게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그 밖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감시위원회는 삭제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를 시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게 하였다. ▲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 단체의 목소리가 뜨거웠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거센 학부모님들의 아우성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조례 제정했다는 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통과하도록 도와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이 조례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과 환경단체, 급식단체 등 시민단체에도 역시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의 이 조례안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학교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고, 특히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욱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하기때문이다. 서울에서는 후속작업으로 바로 이어서 학교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권한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사례



| 박 양 숙 의원 |

사례추진 배경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의 뜻을 세우고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활동했던 경험 때문에 비교가 되어서일 수도 있지만 등원해서 느낀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서울시의 집행부서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핵심축이라 하고 또 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로서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견제대상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은 각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2~3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력들은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적인 일을 담당하거나 기껏해야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을 보좌하는 일을 담당하고 게다가 의회 의사진행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공무원들의 계획에 맞춰 돌아가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정당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수기 의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 이에 시민들의 기대속에 여소야대의 구조로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거수기 의회'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의사국장을 역임했던 당사자로서 국회 운영을 주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아 체계를 세우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권한 확대를 위한 활동

1.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제8대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이루어지자마자 서울특별시의회를 개혁할 조직적 도구로써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2010. 9. 10부터 2012. 9. 9까지 24개월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위원들은 국회를 경험했거나 지방의회를 경험했던 경력이 있는 14명의 여야의원으로 구성하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개혁특위는 초기에는 서울시의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사무처 조직개편과 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 사무처 조직개편

제8대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제일 먼저 의회개혁 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사무처 조직에 대 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직 진단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정리해주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를 하고 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한 전문위원들로부터 발전적인 대안을 듣 는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의회 사무처 조직은 인원이 250여명이지만 대부분은 경비, 속기사 그리고 의회 행정업무와 의사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고 입 법지원을 위한 계약직 전문인력은 채 40여명이 되지 않았다. 40여명이 채 되지 않는 입법지원 인력들 은 대부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인데, 이들은 조례 등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위원 회 차워의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이들로부터 114명 의원 개개인들이 지원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었다. 이에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보좌를 위한 사무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처 조직을 부 분적으로 통폐합해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담당관과 예산담당관 을 설치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은 의회 사무처 인원을 늘려야 하는 사안이라 중앙 정부로부터 총인원을 통제받고 있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 집행부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1. 7. 8 집행부 조직개편안 처리시 애초의 안보다는 축소된 타협안으로 집행부 조직개편안과 함께 처리하였다. 사무처 조직개편안이 사실 의원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처 조 직개편을 통해 시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개혁특위 위원들과 함께 몇 차례 회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 운영 형태와 관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이 무려 16개나 되어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회운영에 익숙해 있던 터라 무려 16개나 되는 조례 및 규칙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제기하였는데, 의회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확대하는 내용과 같은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회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다.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인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 중 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토록 하는 것,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시의장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는 것, 전원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상위법 논란시비로 인하여 조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과 정공법으로 치고나가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결국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적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른 규정들은 현행법안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의회보다 집행부의 권한이 우위에 있는 현실속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 점에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인사권이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이지만,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다만 전원특별위원회 설치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청회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전원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등은 삭제하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원 보좌직원 규정과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규정은 인사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인 개입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상징적 측면에서 존치토록 하였고, 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 개정 촉구의 계기로 삼는 측면에서 존치키로 하였다. 1년여의 논의 끝에 드디어 다수의 조례로 분산ㆍ운영되어 오던 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마련하여 2012, 2, 9 대표 발의하였고, 2012, 2, 27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관련

1) 제정 의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불균형 관계를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시정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구로서 서울시의회가 가지는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규정이기는 하나어렵게 제정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의 효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으니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비록 기본조례안의 효력을 무위로 돌릴지라도 상위법 위반 논란속에 오히려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필요성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전략적으로 존치시켰다.

2) 주요 내용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장 및 교육감에게 당해 연도 조례안 제출계획을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충분한 안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한 의회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셋째,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보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의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증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장의 산하 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 인사를 유도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여섯째, 의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이 집행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 집행부는 조례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앙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부득불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2, 3, 1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재의내용과 이유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기본조례 안 제21조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본조례안 제57조가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반되고 조례 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예상했던 것이었으므로 2012. 4. 18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하였고, 2012. 5. 3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는 또다시 예정된 순서대로 기본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여 6개월여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2012. 12. 26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사후적, 소극적인 인사 개입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 범주로 판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20여년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로서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나아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자치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첫째,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구성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서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바,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이후, 기본조례안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과 관련한 무법의 상황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기본조례안 제21조를 삭제하고 2012. 12. 27 재발의하여 2012. 12. 28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다시 의결되었다.

3.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활동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추진으로 지방사무가 2012년까지 1,982건이 이양되는 등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2001년부터 매년 10% 정도 증가하여 예산 심의 및 결산 관련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를 둘러싼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의원의 역할이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2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지방자치 초기의 부정적인 인식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한편으로는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잘 알려지지 않고 또한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회활동 외에도 KBS라디오, 원음방송, MBC 뉴스, TBS 등 각종 언론 인터뷰, 한국경제 맞장토론, 경향신문 등 언론 기고, KBS 라디오 토

론프로그램 참여, 서울시의정회,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의원들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과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맺음말

지난 4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의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방침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좌관제도를 소요비용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평가 건물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방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주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는지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입법과 정책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면,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여 예산절감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에 대하여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대졸이상 학력의 젊고 유능한 인재가 대거 충원되어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그나마 지금 당장 지방의원이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라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실질적 지방분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전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되는 지금,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에 대하여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더욱부합할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19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터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방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그리하여 서울시의원으로서 등원하며 가슴속에 새겼던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물적 토대를 임기내에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이 꽃을 피우게 되기를!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유 청의원|

추진기간

2013년 6월 14일 ~ 현재

사례유형

자치법규제정

추진동기 및 배경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은 중·장기발전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평가계획인 성과관리계획과 연계된 시정운영의 기본철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이 추구하는 비전-목표-시정방향-사업을 체계화하는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계획이다.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이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의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추진실적 및 진도·성과 등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책환경변화(시민들의 요구, 정책트렌드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서울특별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업무수행의 일관성과 연계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계획"이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하여 나타낸 단계, 목록이나 도표 및 내용을 말한다.
- 2. "시정운영계획"이란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정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정운영계획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정운영계획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실행가능하여야 한다.
- 3. 시정운영계획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4. 시정운영계획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5. 시정운영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및 진도,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시정운영계획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② 시의 소속기관 또는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자체 계획은 시정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시정운영계획은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2장 시정운영계획

제5조(시정운영계획의 수립·변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정운영계획은 시장의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시정운영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운영계획의 내용) 시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정운영의 비전 목표 정책방향 분야 주요사업
- 2. 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 3. 시민욕구조사, 의견청취, 주민의견수렴 등 결과
- 4. 사업별 추진계획,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효과분석
- 5. 기존 시정운영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및 희망서울정책자문지원단

제7조(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 1. 시의 중 ·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2. 시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시정운영계획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조정실장
-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 3. 시정 각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희망서울정책자문지원단) ①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서울정책자문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지원단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 또는 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주민의견 수렴·공개) ① 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을 책자나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및 지원단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성명
- 3. 자문 또는 심의 사항
- 4. 자문 또는 심의 결과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지원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조하고 싶은 점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반영하여야 하고 법정계획 및 비법정계획, 물리적계획 및 비물리적계획, 공간계획 및 재정계획 등은 구분 없이 통합 및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 서울시의 시정운영계획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시장 및 전문가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고, 개별계획은 구분 없이 통합 및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정운영계획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책결정, 예산편성(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사전절차 포함), 감사·조사·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상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운 영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추진(기대) 성과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종합계획인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려웠던 점

집행부인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타 시도의 사례가 없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등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과 상관이 없는 사유를 들며 조례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행정"이 "시장을 위한 행정, 업적을 위한 행정,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향후 과제 및 제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및 노원구의 향후 과제

노원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이다.

또한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2위(59만 7405명), 영유아수가 3위(2만 8872명), 아동청소년수가 2위(14만 4646명), 학생수가 1위(8만 8862명), 노인수가 2위(6만 2514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1위(2만 1451명), 등록장애인수가 1위 (2만 8299명)이다.

노원구와 다른 자치구간 재정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노원구는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09년 1.011에서 2013년 1.012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평균은 2009년 79.2%에서 2013년 65.7%로 13.5%나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시는 필요한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치구는 필요한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치재정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인 택 환 의원 |

추진기간

2012년 1월~현재 진행 중

사례유형

자치법규 제정 및 정책연구

추진동기 및 배경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주로 각종 식료품과 편의품 등 일상적인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모두가 골목시장이고 전통시장이었지만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29개소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골목상 권과 전통시장의 상권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SSM)에 의해서 아사 직전에 처해 있다고 할 정도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쇠락해 가고 있다. 대규모의 유통업체, 소위 대형마트는 73개소, 기업형 슈퍼인 SSM은 280개소, 하나로마트 32개소 등 385개로 계속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도 현대화되고 시설이 좋은 대형마트 쪽으로 발길을 점점 돌리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골목상권과 재래전통시장은 피폐화되어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서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핸드폰 등 통신요금, 자동차유류대금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생활필수 편의품들에 대한 소규모유통업조차도 궤멸되고 대기업중심으로 자본이 편중되어버리면 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이고,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순환되며 활기가 살아난다.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안전판을 두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궤멸시켜버리게 방치한다면 결국은 시민들의 구매의 선택의 폭

서울특별시의회

을 좁히게 되고 그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형성으로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전체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 농사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논리가 일맥상통된다. 논농사가 외국의 식량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도저히이해타산이 안 맞지만 더 이상 피폐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차후에 식량무기화에 대한 방어책의 구축이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호 대책이다. 마찬가지로 골목이나 재래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완전독과점 형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지역경제보호와 영세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황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우리 선거구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려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식 하에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이고 끈질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추진내용

1)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제시 및 촉구

박원순 시장이나 경제진흥실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제시와 촉구 등을 하여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이벤트성의 일시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큰 자본이 들더라도 제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누차 주장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상인과 고객들의 공동편익시설확보와 주차장 확보를 해주되 어려우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낮에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위치를 선정한다면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형마트나 SSM 등의 편법적인 마트들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규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원수 시장으로부터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 2) 매스컴 등에 보도자료 제공과 신문에 기고 등을 통한 전통재래시장 보호 필요성 홍보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신문 등에 기고도 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고 서 민경제가 살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누차 역설하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 취해왔다.
-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주차장 마련을 위한 노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과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 하여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공약하기도 하였다.
- 4)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구축노력 몇 년 전 장안동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후 피폐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안동의 지

역경제를 진흥시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모멘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각 분야의 지역유지들과 더불어 그러한 모멘트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춤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자는 전략으로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장한평 전철역에서 장안동4거리 구간 1,5km의 35m폭의 버스차로를 양쪽입구에서 차단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세계거리춤축제를 주민들과 같이 기획해서 장안동 지역주민들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하고, 뒤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 지원하고 아리수 수만 병을 지원하는 등 각종지원과 행사에 필요한 교통통제 등 구청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내는 데 앞장을 섰으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들로 부터행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등 각종 물질적 ·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2012년 10월초 첫 개최를 시작으로 연이어 올해에도 10월 12일, 13일에 2회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데 핵심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진행은 기획사가 용역을 맡아서 하지만 지역의 거의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축제로 전국에서 춤꾼과 단체들이 경연에 참여하였고 외국 춤과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도 많이 눈에 띄었다.

퇴폐유흥가의 악명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작년 1회 때는 5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축제가 2일간 성공적으로 열린 관계로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일부신문에 보도되었다.

5)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노력

-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상인단체에 인근주차장관리권 부여권장, 각종 공공부지를 전통시장이 고객이나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 서 임대 시 대부료 80%감면 조항, 빈 점포 활성화와 편익사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온누리상품권을 공공단체가 포상금지급이나 소모용품구입에 적극 사용토록 의무적 사용권장조항 신 설, 시장현대화사업지원과 주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설치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시장 ·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서울시가 개설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1일 1회당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하고 이후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을 촉진코자 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만 50%할인해주는 것으로 통과시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 · 하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보호를 위해서 관련법규를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도로 · 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 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 설에 대해 감면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진입로, 비 가리개 등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현행 조례의 산정기준 대비 80/100만큼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도로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으로 점용료 감면과 관련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감면비율을 추가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전통시장내의 개인 의 도로점용료를 현행 5%에서 3%로 낮춰주는 내용을 개정하여 그간의 고객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편익 을 위한 조례와 달리 개인적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하여 통과시켰다.
- ·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규정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시에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정한 의무휴업일이 다를 경우 이용 시민의 혼란은 물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 려는 목적이 무색해지므로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들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집행부의 반대로 해당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류된 상태에 있으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설득 노력을 통해 다음 회기에는 꼭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 ·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활약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특별위원회 필요성을 절감하여 구성을 위해 앞장섰으며 전통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피선되어 현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특별위 원장으로서 특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고 많은 보람있는 일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현장 방문과 시장상인,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체득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촉구를 통하여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망우리 우림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돌아본후에 상인대표들과 오랜 시간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단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서울시 상인연합회장 등 대표단들과 상의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작은 요구사항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특위를 대표하여 본인이 담당부서장에게 촉구하여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부서 간부들을 합석시켜서 여러 차례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촉구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에 대해요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결국 특위위원장인 본의원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강조하고 싶은 점

무너져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보호정책을 퍼왔지만 그 효과는 투자에 비하여 너무 미미한 실정이다. 근시안적이고 일회성 이벤트 등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는 오히려 자생력만 약화시키고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경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보호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와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또한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커다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조금씩 일회성적인 행사경비 등에 지원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해에 걸친 예산지원의 누적 금액은 대단히 많은데 예산투여에 대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대형마트들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장과 공동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의 확보를 지원해 줘야 한다.

추진(기대) 성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등 거대자본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잠식하고 피폐화해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미봉적 보호입법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 미봉책이어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들과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차장 확보와 공동편익시설 확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 등의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보호정책이 될 것이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답십리 현대시장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이 어려웠던 시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플래카드를 내걸고 본의원에게 감사장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또, 지역축제의 개최는 주민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기능한다. 본의원이 구상하고 참여한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는 계속적인 성공적 개최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간 '장안동' 하면 떠오르던 퇴폐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춤축제의 전국최고 진원지라는 명성을 매긴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 진흥의 기폭제가 되도록 주민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노력할계획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답십리 현대시장의 경우 20여 년 전부터 민원이 폐지된 버스도로에 120여개의 점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들 점포는 매년 도로점용료가 아닌 불법점용료인 변상금을 할증하여 징수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은 불법점유여서 도울 방

법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그동안 넘어왔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대시장 대표들과 도울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결국 이들의 불법점용료인 변상금에 대해 항구적으로 40%를 제도적으로 깎아주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도로점용하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이다. 연구해본 결과 이 시장은 불법점유자들이지만 전통시장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철거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도로점용료율을 깎아주면 자동적으로 불법점용료도 깎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는 변상금 산출식을 발견하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물론 명분은 전통시장내의 상인을 위한 정상적인 도로점용료 할인이다. 그러나 도로불법점용자들도 거기에 할증료만 붙으므로 결국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답십리 현대시장 상인들은 현재 변상금의 40%를 감면받게 되어 내년부터 1년에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본인이 마침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서 건설위원 전원을 공동발의자로 넣고 본인이 대표발의 자로 하였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하루 전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검토해보니 별표사항에 추가한 항목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아 본래 취지의 주요목표였던 현대시장에 도움을 못 줄 것 같아 깊이 연구고민 끝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을 만들기로 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아슬아슬한 과정이 몇차례 있었지만 무사히 통과되어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자로 나서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사실 건설상임위원회 통과가 되자마자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취해서 너무 기뻐서 그런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기까지 하였다

향후 과제 및 제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보호정책은 단순히 경제논리를 따지지 말고 부단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회성이나 단기성적인 이벤트적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경쟁력을 고양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들의 지속적인 실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호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토록 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완화를 통한 중산층 붕괴 방지와 소위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인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에 소신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할 생각이다.

3개의주민숙원사업 동시에해결한 시의원



연지(69년 만에). 양정(52년 만에) 공원조성

| 박 석 동 의원 |

일제 강점기시절 경마장 주변지역이며, 한국전쟁 시절부터 2008년까지 미군하야리아부대 주둔지로 존속해 오면서 100년의 한(恨)이 서린 주변지역 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특별법' 제2조2항 및 제17조를 적용시키지 못한 채였다. 그러나 발전종합계획이 행안부와 2008년에 결정된 것을 알고, 등원하자 준비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특히 주변지역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단초를 잡아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했다

오랜세월, 무단 점용료 미납분 해결에 주민이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보상비나 이주금으로는 턱도 없는 이주자들은 동사무소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공폐가에 도배 인터리어로 대체 시켰다. 또한 일부 주민의 반대와 공공의 비협조를 뚫고 광역시장과 담판지어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청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 설명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주민의 숨통을 틔어주는 쉼터,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노인정 역할을 하는 팔각정, 숲 조성 등 다목적 공간으로 진행해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초읍 서민산복도로(12년 만에 재개)

주위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 항상 교통 체증이 있음에도 산동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근으로 가야할 때는 큰 도로로 나와야 했다. 대공원 내에 동물원이 개장함에도 불구하고 산복도로이며 도로폭이 기초단체 소관업무라 12년간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었다. 이에 '자치단체이전보조금' 설계비명목의 2억원으로 시동을 걸어 2012년도 10억원, 2013년도 15억원을 확보하여 본예산에 없는 특별비로 공사를 12년만에 착공을 하게 됐다.

산복도로 개통이라 공중에 붕 뜨는 집이 나타났지만 주민의 이해를 구하였고 주민의 전폭적인 협조로 불가능한 공사를 가능으로 이끌어내어 올해 10월 공사재개하여, 사직동이나 인근구(區)로 산복인이 통 행하는 데 그 숙워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합작품을 이루어내었다.

보람

환갑이 넘어 초선으로 당선되어 하고 싶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야 행복하고 기쁘고 직원 한명의 보 좌없이 초심과 서민 먼저의 마음을 잃지 않은 보람이야 있지만 할 일 많은 광역지방의원의 서글픔도 함 께 밀려온다.

> 부산광역시의회 박 석 동 의원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현장중심의 대안제시로 부산시 400억원 예산절감



| 이 대 석 의원 |

재정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계획없이 도시관리계획 절차만 추진하려던 교육청의 국제중·고교의 증설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이로써 양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그간 교육청은 양호한 도시숲을 이루면서 경사도가 매우 높아 학교부지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국제중·고교의 증설계획을 추진해 왔다.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중·고등학교 증설안이 제시될 때부터, 녹지를 훼손하는 대신, 학생감소로 이전될 폐교 예정부지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제안했다.

- 시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교육청의 경직된 의사결정구조와 지역주민의견의 무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 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가 제시한 대안을 채택하여, 예산절감과 더불어 자연훼손까지 보호하는 큰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 특히 우수한 도시숲을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4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증설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수용되는 사례인데다 예산절감과 민원해소를 비롯해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치되어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원을 통해 부산문화 정체성 확립



| 신 숙 희 의원 |

추진기간

2010년~2013년 제6대 의회활동 기간

사례유형

자치법규제정 및 주민참여

추진동기 및 배경

먼저 부산의 무형문화재 실태를 파악하였다. 무형문화재 문제는 주민참여의식 속에서 새로이 재탄생되고 사라져가거나 사장될 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문화의 뿌리를 찾고 보존하기 위해 발단을 삼은 부산의 무형문화재의 실태를 들여다보면서,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유자들의 생활고와 전수자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전수할 상황도 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산 무형문화재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부산 무형문화재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만약 현 시점에서 방관한 채 놔둬버린다면, 부산의 무형문화재는 그대로 사장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인지하고 2010년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실태는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신경 써서 보존하고 발굴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한 현실로 판단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추진내용

1)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무형문화재 발굴 보존 추진사항

시·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의 열악한 시설과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수관과 공연장 시설 미 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불합리한 부산시의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판소리나 탈춤과 같이 형체를 갖추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나 목소리를 통해서 전수되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전승자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사하구 '다대포 후리소리'의 경우 전승 및 보존실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로 1987년도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명맥을 겨우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렸다

심지어 후리소리보다 14년 늦은 2001년도에 지정된 '구덕 망께터 다지기'도 전수관과 공연장이 있는데, 바다를 끼고 바다를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부산에서 예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활을 표현한 민속음악을 재대로 전수하고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시의 자체적인 문화유산정책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제시했다.

첫째,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설을 갖춘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를 전수조사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후리소리 전수관과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셋째, 부산시의 문화유산정책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재검토하고, 특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가 없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였다.

넷째,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정, 보유자, 전승조교 등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상시기 구를 설립했다.

2) 보다 세부적인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시정질문' 추진

부산시는 시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통합전수관 구축이 시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시정질문을 통해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무형문화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예능 분야의 형평성를 제고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보유자와 보유자 후보. 조교와 장학생 등 각 단계의 전환주기 및 적정 인원을 양성하여 무형문화재의 근본적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무형문화재는 사회적 지원확대를 위한 기업의 메세나 연계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서양의 오케스트라, 합창단 일색의 기업지원을 우리 전통문화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각 자치센터별 시민참여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시민 전파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알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 다는 것이다.

다섯째, '흥'을 다룰 줄 알았건만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놀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 부산이 그렇다 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소중한 무형문화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므로 제대로 발굴과 활용을 통해 흥을 아는 부산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필요성 제기

2010년도에 한번의 5분 발언과 2011년에 이어지는 시정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부산의 문화재 보존,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대한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곧바로 개최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4) 문화원 건립 배경

사하구는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화 이후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지역주민들은 늘상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삶속에 찌들린 일상을 풀어주고 보듬어줄 공간이 없었다.

문화적 역사적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차에 사하구의 특성을 잘 살려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문화구민으로서의 긍지를 북돋우고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고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본 문화원 건립에 매진하였다. 실제 시작은 무형문화재 발굴과 보존이었지만, 이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실생활에서 시민들, 또는 구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사하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원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2010년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11년도 7월 시정질문과 부산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시로 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고, 2011년 2월부터 건립에 따른 사전작업을 착수하여 8월에 창립 총회를 하게 된 것이었다.

5)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규 제정 배경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생활고로 찌들린

전승 보유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지를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인터뷰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에 대해 5분발언, 시정질문에 이어 조례 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시의회에 있는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조례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조례 제정에 착수하여 2012년에 공표하게 되었다.

추진(기대) 성과

1)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 토론회 개최

시정질문 이후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보존 방안을 모색하였다.

• 부산시 무형문화재의 발전방안

첫째,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의 자긍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승교육 및 연구화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으며

넷째.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보화.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이 참여하고 부산시의회가 주최가 되었으며 본 의원이 사회자로서 대토론회를 주관 하면서 부산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대한 문제점과 보존방안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부산시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가 부산시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다.

2) 문화재 신규발굴을 위한 부산시의 의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무형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더 넓게 책정하였다. 2011년도 하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3) 다대항 문화축제

2010년에 1회를 맞이한 부산 다대항 축제가 2011년 전통문화살리기 캠페인을 벌인 이후 제2회부터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로 축제명을 변경하여 2013년 현재 4회째를 맞이하였다. 다대포항이 개항된 후 이렇다 할 축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끌어 들이면서 다대포항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수산물과 문화가 접목된 축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다대포어항문화축제에서는 다대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어

항축제가 이젠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민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밋거리를 제공하는 즐기는 축제로서 발 돋움했다.

특히 제4회 축제에는 지역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축제로 새로운 어촌문화를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과의 소통과 어업인들의 수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다대포어항문화축제가 셋팅하고 발전하기까지 지역민들의 주머니가 열리고 수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보다 규모 있는 축제로 재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사하문화원 건립

2011년 8월 31일 창립총회를 열면서 사하구민들은 더 이상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리는 지역이 되었으며, 이후 사하구 구민들이 문화원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력했던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을 전수관이 아니라 문화원 행사 중 주 말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다대포 어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전수자이자 어민들의 생활고가 너무 열악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꾸준히 지원 · 발전하고 있다

2013년도 사하문화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향토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통해 사하고유문화를 계발·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활동의 산실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즉지역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을 통해 사라져가고 잊혀질 뻔한 다대포 후리소리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말마당을 개설하여 신명나는 놀이판을 만드는가 하면, 공예(기능)분야의 전통신 '다홍신만들기' 체험교실을 특화하여 계승발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사하구 지역의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 등의 자연을 그림으로 승화시키므로서 자연문화유산 속에 살아가는 지역구가 되도록 하였다.

5)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본 조례의 내용은 '첨부서류'를 통해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제안이유로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음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적용(안 제3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의 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

원의 중단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안 제6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가장 보람 있게 추진했던 것이 무형문화재 발굴과 전승, 그리고 보존에 대해 추진한 의정활동이었다. 처음에 5분 발언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도 부산시의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누구도 무형문화재의 고충을 읽어내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시의회 의원들도 공감하였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또한 사하구 지역민들도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민들이 앞장서서 축제한마당과 문화원 활동에도 전통문화, 즉 사하구의 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조례제정과 지역주민의 참여는 해당 지역에 상당한 반향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부산시 전체에도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전체에서도 무형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본 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을 수 없다. 즉 사라져버려 이미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춘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의 의지가 더 필요하고, 국가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해 한 지역구에서만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 전통문화에 대한 발굴 및 전승 보존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만 사라져가고 없어질 수 있는 전통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시의원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민의 대변인이다. 시나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교육과 환경의 개선, 문화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환경의 개선, 문화 보존에 대해 주야장천 노력하는 의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6대 의회 들어가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속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곧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자 시너지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라져가는 문화재 복원과 발굴 과정상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상호 교류와 협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특히 모든 정책의 구상과 정책적 방향은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려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책보고서 발간에 기초한 정책의회 제도화 강화



| 이 상 갑 의원 |

기간

2010년 7월 6일 ~ 2013년 10월 31일 현재

사례 유형

정책연구분야

주요 정책사업별 추진 내용

1) 도시정부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회 활동

• 의정보고서 시리즈를 통한 집행부 설득과 협력 방안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은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집행부, 산하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정보고서 시리즈" 형태로 접근하였다. 이 의정보고서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정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도시정부의 생태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정책의회 활동 (시정질문) 부산시의회는 1년에 3번(3·7·10월)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의원임기동안 평균 1건을 하기도 힘들지만, 본 의원은 연초 계획을 잡고 관련 자료 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3년간 3건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시정질문의 주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 세밀하게 준비했다. 주제는 도심하천과 하수관거 관리실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현황, 생태하천 조성실태 등이다. 이 분야를 주제로 삼은 것은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부산광역시의회

높고, 부산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진배경

부산지역에는 지방하천 46개소가 있으며, 온천천을 비롯하여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지역별로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미래에 동천을 비롯하여 초량천, 대연천 등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은 되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예비 조사한 결과 10mm 이상 강우 시 오·폐수 및 퇴적물 등의 유입으로 수질, 미관 등에 있어 시민생활 불편만 야기되고 있었다.

추진과정

부산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도심 속 지방하천만 46개소가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수천 억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생태하천 복원은 전무하고 계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매일 기상조건에 불문하고 아침 5시부터 2시간 정도 삼락천을 비롯하여 생태하천을 발로 뛰면서 문제점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나누며, 현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았다.

이런 결과들이 하나하나 모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서적에서 공부도 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생태하천 복원 지역(창원·마산·김해·울산·대전·수원·서울 등)을 찾아 다녔다. 그 결과, 몇몇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부산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안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하수관거의 부실설계와 불법 폐수가 유입된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해당 실·국에 서면질의 요청서도 보내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무단 불법행위들을 동영상 촬영까지 직접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전달하였다.

추진성과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을 토대로 부산시 해당 실국에서는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013년도(1단계)로 하천오염 해결을 위한 전담「One—Stop 과학조사반」 구성과 2014년(2단계) 행정기관(환경, 하천, 특사경,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전문가(교수, 단체 등)로 하천별 사례 분석과 활동매뉴얼 작성 후 본격 활동을 이끌어 내는 성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대책으로 하수BOX준설 시행, 차집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축산물도매시장 오수 관거 위치 변경, 폐수 무단방류 단속 강화와 주민·상인 자율환경보전활동 추진 등과 중·장기 대책으로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공사 착공, 분류식 하수관거(지선관로)공사 조기 착공, 유지용수 공

급 확대와 24시간 상시 자동수질감시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서(기관)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민·관이 주축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생태하천복원과 운영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방안이 마련됐다.

보람

그 동안 본 의원이 현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문제를 인식했다.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전부 받아들여 향후 잘못된 행정체계와 현장에 대해서 종합대책 발표와 상시 감시·감독은 물론이고 불법행위 근절 등의 정책의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토목위주의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2중 3중으로 낭비하는 요인을 줄여, 제대로 된 친환경 도심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정책여건이 조정됐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지역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주민들의 격려 전화와 칭찬으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으로 투자된 시간에 대해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 매년 의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보고서 책자는 전문가 못지 않은 내용(생태하천)을 담은 의정보고서로서 언론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 또한 부산시 관계기관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가는 향후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본 의원의 자료를 "교과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어 보람을 느꼈다.

특히, 유해 위험 화학물질로부터 시민 불안 사전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촉구되었다. 전국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대규모 주택가 인근에 많이 밀집된 서부산권 일대의 현황파악과 상시 감시 감독 시행, 관련 전담기구설치, 화학물질 사업장 인근지역 대피요령과 정보제공, 유해물질교육 및 감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부산시 차원의 방제시설 보강 등과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대응 매뉴얼 개발과 향후 이주 대책수립을 촉구되었다.

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부산을 위한 갈맷길 등의 조성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착, 부산시 소재 28개의 도로터널과 향후 건설계획 중인 도로터널의 보행환경 개선실적이 전무한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부산시에서 보행자 터널 개선사업에 대한 방음시설 등 소음·매연 차단을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2) 5분자유발언

① 정책사례 1: 전국 최초 소음지도 작성을 유도한 "도심 주거 밀집지역 소음실태와 개선 방안"

배경

부산시 전역 교통량 밀집지역 소음발생 전수조사 상시 주기적 측정, 소음지도 작성, 소음도가 높은 지역

부터 소음저감 중장기 대책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추진성과

환경녹지국, 각 기초단체, 전문연구기관, 정부 등 관련기관 상시 협의시스템 구축이다. "부산시 도심 주 거 밀집지역 소음실태와 개선방안 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서 부산시의 전국 최초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성과를 냈다. 도심주거지역 소음 실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였다. 소음지도 작성. 부산시 소음대책협의회 구성도 역시 그 성과이다.

② 정책사례 2: '걷기 좋은 도시, 사람중심 도시 지향하는 터널 보행 환경' 정책

배경

걷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부산을 위해 갈맷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향상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 소재 28개의 도로터널과 건설계획 중인 도로터널의 보행환경 개선실적과 계획은 극히 미흡하다.

문제점

보건환경연구원(2011.11)의 터널 내 공기질 조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7개 주요터널 중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이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터널 내 환기기준에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만 조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있고 이산화황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오염도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 사각지대였다. 7개 터널을 제외한 터널은 오염도조사조차 선행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인도가 있는 터널은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어 심각한 건강상 유해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책제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심터널 내 열악한 터널내부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부산시 소재 터널 내 통행 빈도수가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와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보행통로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이다. 둘째,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의 의무화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터널 공기질 조사 범위 확대와 기존 조명시설의 쾌적한 조도 확보차원과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LED조명 교체이다.

③ 정책사례 3: 부산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사학재정지원금 운용개선 촉구(2011.6.6)

배경과 추진 과정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사학재정 지원금 운영 개선 촉구가 그 배경이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시 교육청의 사학재정 지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만, 실제로 사학재단은 자기부담금 비중이 낮고, 결산 등이 1년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산시기와 불일치 ② 사립학교 법정부담액의 저조 ③ 사학재정 지원 대상학교의 도덕적 해이 만연 ④ 사학재정지원 절차와 사전점검 미흡 ⑤ 시교육청 현지실사보다는 서면실사중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추진성과

부산시 교육청은 2010년도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지원된 3,345억원에 대한 결산검사를 재점검하도록 하였다.

먼저, 부산시 교육청은 정산시기 개선 노력으로 학교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9명으로 T/F팀 구성, 재정 결함보조금 및 정산과정 재검토, 둘째, 법정전입금 납부실적 증대 방안으로 법인 수익금 70%를 법정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학경영평가시 법정부담 전출실적을 반영, 셋째,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후 학교별 지원액, 집행잔액 등의 정산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3) 입법활동 : 조례 제정과 개정활동

① 정책사례 1: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촉구"

제정 배경

뿌리산업 진흥사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 마련이다. 뿌리산업 업종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뿌리기업 간의 협동화사업 지원이다. 3D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뿌리업종을 디지털화하고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변화하는 신3D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추진성과

부산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를 통해서 달성된 정책성과는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013,09,26)이다.

세부적인 성과는 첫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2013.2.7~9.4. 용역비 83.6백

만원)다. 둘째,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구성(2013. 2월 : 위원회 구성 계획보고), 셋째,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정』 신청이다. 넷째, 『첨단 표면처리 기술지원센터』 구축이다. 그리고 뿌리기술을 보유한 국내 외 은퇴명장 들을 적극 활용. 기술교육 및 합작회사 설립 등 기술유치에 노력하도록 했다.

보람

"뿌리산업"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이 분야는 1970~1980년대 부산시 산업의 중요부문을 차지하였던 기 본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책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향후과제 및 정책제언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정책협력을 이끌 수 있는 의원이 중요하다.

의원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조정자이자 정책결정자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서, 이해집단,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를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의 의정역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의원으로서 지역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의회 내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특위활동을 통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원보좌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지원 조직은 상임위원회, 입법정책담당, 예산정책담당 등 존재한다. 하지만, 지방의회지원 조직 중 일부만이 전문성 · 독립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일반직 공무원, 즉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부문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원지원조직은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책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계약을 통해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박 돈 규 의원 |

1. 조례제정 배경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들고 있으며, 그 주요수단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중 우리 지역에 밀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제조업의 근간(根幹)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 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뿌리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우리 대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뿌리산업의 정의와 활성화 필요성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자동차·조선·IT 등 관련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일 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산업이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며,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대구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대구 뿌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구시는 뿌리산업의 핵심 지역이고, 지역 뿌리산업은 전국대비 비중이 수도권 동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집적화된 지역이다. 주요 내용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주조(22.4%), 소성가공 (17.9%), 열처리(25.9%), 표면처리(14.8%), 금형(15.5%), 용접·접합(16.3%)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제품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37.9%), 일반기계(24%), 모바일(11.3%), 또 6대 뿌리산업의 지역연간 총생산액 6.7조원 중 대구가 1.6조원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은 지역제조업의 토대이고, 제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려운(Difficult)

이른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인력확보의 문제 및 자금확보,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지원기반이 취약하고 생산현장 인력의 고령화(40대 이상 55%), 인력난 심화(외국인 약 40%),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성과창출에 장시간 소요되는 뾰족한 해결책 없이 악화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산업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대구 뿌리산업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전통제조업 토대 위에(뿌리산업 활성화)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지원 수요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지원 인프라(설계, 시험, 신뢰성 평가를 위한 공용장비) 확충과, 공정자동화/전산화, 공장 클린화 및 작업환경 개선, 떠나는 산업에서 찾아오는 산업으로 전환 유도, 정부지원 사업 적극유치(광역경제연계협력사업 등)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 예로, 친환경 녹색공정시스템을 접목하여 뿌리산업의 녹색화를 통한 혁신적인 '신3D(design, digital, DNA)산업'으로 전환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 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등 기업지원기관의 보다 밀착된 첨단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경험 많은 뿌리산업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중소기업지원단 운영', '뿌리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통하여 뿌리산업 전반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5. 대구광역시의회의 역할 - 조례제정

대구시의회는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에 기반을 둔 튼튼한 강소기업이 도시를 만들고자 단기적인 관심에 의한 발전이 아닌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제 정을 통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업계와 학계, 대구시공무원, 정책지원기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뿌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조례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산업집적단지 지정,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한 지원,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뿌리산업이 육성 발전되어 산업전반에 걸쳐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6. 조례제정의 효과

대구시 조례제정(2013. 6. 10)을 통해 우선 뿌리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 및 인식개선과, 뿌리산업의 녹

색화 추진(공정자동화, IT융합, 공장클린화), 에너지 다소비 뿌리산업(주조, 열처리, 용접 등)의 녹색산업 전환 지원,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 지역 선도 산업과 동반성장 추진, 뿌리산업 군(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뿌리산업 융합블록 조성사업 추진, 노후공단(3공단 등) 재생사업시 친환경 도심 산업공간 재창조, 신규공단 조성시 융합형 집적단지 조성(뿌리산업 집적화 단지), 지역 연구·기업지원기관을 통한 지원사업 지속추진(맞춤형 기술지원, 첨단장비 개방 및 공동 활용 등), 지역 뿌리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집중 육성 방안 모색 및 특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개발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구에서도 뿌리산업에 근간을 둔 장인들이 대우받으며, 서유럽 각국에서처럼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기술과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영국의 만년필 같은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키는 견인차역할을 해온 것 같이,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대구에서도 명품전자제품, 명품의료기기, 명품로봇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 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제안

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수준이나, 산재율은 높은 수준으로 3D 산업 이미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는 근로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인력수급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취업기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기능직 인력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 산업기술 경쟁력을 뿌리부터 약화시키는 일이다. 체계적으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더 나은 입지환경이 필요하다. 실제 뿌리기업은 他산업에 비해 산단 입주율(25.1%)이 저조하다. 영세한 규모와 자금력으로 인해 지역산업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 낮은 지원과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기술경쟁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뿌리기업의 부가가치, 기술력, 영업이익률 등은 他산업 및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기술경쟁력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 및 특허공유 등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원천기술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 최초의 지역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제공을 위한 대구경제 통합플랫폼 「대구경제플러스」 구축

1. 추진배경

대구 지역 기업 및 산업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수요자(일반인, 기업, 각종 유관기관 등)가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결과(2008, 9): 기업 정보의 통합 제공에 대한 찬성 73,2%).

국내·외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마련과 동시에 지역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정보제공 시 스템이 필요하여 전국최초로 실시하게 된 사업이다

2. 추진목적

대구 시민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을 위하여 물가정보, 취업정보, 재래시장정보, 기업지원 정보 및 각종 정부지원정책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경제 관련 정보를 정보수요자별로 맞춤으로 제공하여, 단일 웹상에서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수요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것이다. 또한, 상품 디지털카탈로그 제공을 통한 상품 홍보 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상품 판매를 지원할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On-Line 마케팅 지원 공간을 창출하여, 검색기능이 가능한 상품 디지털 카탈로 그를 제공함으로써 웹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수요자가 지역의 산업 및 경제 관련 정보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3. 추진경과

지역 경제 정보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시의회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의 발의로 대구테크노파 크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로 1,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사업 협약체결 및 3단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전국 최초의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www.dgeplus.or.kr)를 구축하여 개통하게 되었다.

4. 추진내용

- ① H/W, S/W,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제 정보제공 시스템기반을 구축하였다.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H/W 및 S/W를 마련하고, 보안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기반음 구축
- ② 기업 정보제공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 -뉴스레터 발송시스템, 휴대폰문자서비스(SMS)시스템, 설문조사시스템 개발 등 기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도구 개발
- ③ 홈페이지 회원 가입, 이용도 향상을 위한 회원의 부가 서비스기능을 제공하였다.
 -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템플릿 5000개, 문서서식 무료제공,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 ④ 홍보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대구경제통합플랫폼 사업 인지도 향상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On-Off Line 매체를 활용

하여 홍보

-또한, 컨텐츠 강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5. 주요 성과

- 1) 홈페이지 개통 및 이용현황
- ① 2010년 4월 28일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수 14만 743명, 홈페이지 회원수 3440명이 가입하였다.
- ② 기업 홍보 디지털 카달로그 수정 및 신규 제작을 지원하였다.
 - -신규 제작 : 200개, 수정 및 보완 : 50개
- ③ 온라인 및 SNS 마케팅 프로모션을 구축하였다.
- -대구경제플러스 블로그 방문자: 3만 7705명
- -검색 마케팅 이용횟수: 노출 352만 2048회, 총 클릭 2만 3282회
- ④ 2751건의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였다.
- ⑤ 만족도 조사결과 홈페이지 이용 업체의 약 80%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 2)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모바일 서비스 도입
- 2012년에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하였다.
- ① 홈페이지 이용자수: 3만 1989명
- -홈페이지 회원수 : 9318명 (2011년 대비 2578명)
 - ※ 방문자 누계 74만명 돌파
- ② 기업 마케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콘텐츠 강화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 확대
- -Made in Daegu 인터넷 홍보관 확대 운영: 10개 기업 홍보 지원
- ③ 기업 홍보용 디지털카달로그 신규 제작 및 수정 지원
 - -신규 제작: 30개(누계 1030개). 수정: 30개
- ④ 대구경제플러스 App(어플리케이션) 개통(스마트폰용)
- ⑤ 신규 회원 서비스 추가(포토소스, 클립아트 소스 추가 지원)
- ⑥ Facebook, 트위터, 블로그 홍보 및 브로슈어 2종 제작 및 배포
- ⑦ 홈페이지 활용사례 설문 조사
- ⑧ 만족도 설문 조사
- 3) 기업홍보용 디지털 카달로그 제작 지원 도입
- 2013년 10월 현재
- ① 홈페이지 이용자수: 24만 188명(누계 98만 1832명, 월 평균 2만여명, 일 평균 1000명)
 - -홈페이지 회원수: 1만 559명

※ 방문자 누계 98만명 및 회원수 1만명 돌파

② 정보 제공 건수: 8154건 -기업 현황 DB: 6125건

-정부 기업 지원 정보: 1491건

-기업 뉴스: 109건

-기타 정보(특화단지, 유관기관 정보): 429건

③ 기업 홍보용 디지털카달로그 제작 지원 : 총 1040개 기업

6. 성공요인

- ① 기업 마케팅 지원 서비스와 기업 지원 정보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향상과 기업 거래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② 계속적인 콘텐츠 추가/관리(디지털카탈로그, 유관기관 콘텐츠 확대 등) 및 모바일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공과 스마트 시대 효과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 ③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및 반영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기관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였다.
- ④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사업 및 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유연한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⑤ 지역 기업이 보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여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지역 우수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7. 향후 확대추진 계획

모바일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쌍방향의 맞춤형 경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스마트폰 및 핸드폰을 통한 기업 지원 정보 푸쉬(알림) 제공
- 관심 정보 맞춤 설정에 따른 정보 제공
- 발송통계 구현 등(발송된 전수/그룹별 전수/일별/월별/년별 전수 등)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Ⅰ김영분의원Ⅰ

추진기간

2010년 9월 ~ 2013년 10월 현재

사례유형

정책연구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소래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이 서식·도래하는 곳으로 생태적 중요성과 수도권 습지로서 보존가 치가 높은 곳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에 총면적 156만 1000㎡, 공유수면 76만9000㎡와 폐염전 79만2000㎡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래포구와 함께 연간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갯벌과 해양생태자원을 체험하고 휴양하는 공원으로 200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자연체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해안도시인 인천으로서 바다와 사람이 직접 만나는 최선단의 중요 습지생태공원으로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인천의 발전에 따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송도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습지 등록추진과 인접한 시흥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향후 방향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해 본 의원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내용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조성공사 추진(2011.11 ~ 2013.5)

인천광역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2010년 9월 28일 제1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물량장 주변은 폐 어구 및 각종 쓰레기가 적치문제 해결과 조속한 3단계 조성공사 추진을 촉구하여 2011년 11월부터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곰솔 등 11종의 교목, 1만 123주와 해당화 등 8종의 관목 3만3000여 주, 물억새 등 2종의 지피식물 15만여본, 잔디 등을 식재하였고 주차장과 관찰데크, 쉼터 파고라 등이 설치된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조성공사를 2013년 5월 완료하였다.

소래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화 추진방안 연구 의뢰(인천발전연구원, 2013년 하반기 연구과제) 소래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소래습지와 인접한 시흥갯골과 연계 한 국립공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래 습지보존방안 강구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결과 소래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정밀모니터링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시행과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흥갯골과 연계한 보전, 복원,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관련 시정질문(총 2회)

2010년 9월 28일 제1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조성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인천대 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조성계획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2013년 7월 8일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인천시 공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화을 주장하였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2013.10.10)

본 의원이 의뢰한 정책연구과제가 제출됨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발전 방안 및 주변 갯골습지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를 인근 시흥습지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기존 소래포구 활성화 및 지역 어민 어업 활동 지원과 연계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방안 등을 인천시와 시흥시, 관련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집중 논의하였다.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갯골습지의 공동관리 협약체결(2013.10.14)

시흥갯골습지-소래습지 선상답사, 협약 체결식, 소래습지·시흥갯골습지 공동비전 수립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향후 관계 공무원, 의제21, 환경단체가 모여 연구조사와 환경 감시 등에 협력하고 지속적인 소래습지·시흥갯골습지 공동 운영관리 세미나를 열어 비전을 수립·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인천시와 시흥시는 공동관리 협약을 맺었다.

강조하고 싶은 점

소래습지와 시흥습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문화적으로 해양, 염전문화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태 환경적으로 많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고 있어 수도권 서해안 최대의 염습지로서의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오랜 생물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하나의 습지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달리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습지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와 시흥시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갯골습지의 공동관리 협약체결로 소래습지와 시흥습지의 보존가치 향상과 더불어 향후 국가의 습지보호정책 추진에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추진(기대) 성과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운영·관리되었던 것이 2006년에 예산과 운영 등의 문제로 인천광역시로 이관되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와 조성비 104,391백만원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사업비 15,861백만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소래습지생태공원 미조성지 3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쾌적하고 깨끗하여 걷기 좋은 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며, 인천둘레길 6코스에 포함,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흥갯골과 연계한 갯벌생태축 조성을 위해 소래포구 인근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습지를 보전해야 하는 의미와 필요성에 두 지방자치단체와 습지보호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관련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노력한 결실이다.

순천만, 증도갯벌과 같이 우리 소래습지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관리된다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별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따라 보전 및 관리 사업비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수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본 의원은 남동구 구의원 시절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생태보존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 왔다. 우리나라 갯벌 중에서도 소래습지는 시흥갯벌, 오이도 갯벌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이 서식·도래하는 곳으로 생태적 중요성과 수도권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미조성부지에는 많은 쓰레기와 페어구들이 방치되어 있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적인 시정질문 등을 통해 미조성부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여 현재는 쾌적하고 깨끗하여 걷기 좋은 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며, 인천둘레길 6코스에 포함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에는 대단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어항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토론회를 통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절대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참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향후 습지보호구역 지정 시 인근 소래포구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환경 및 생태계 보존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생태공원과는 공존할 수 없는 습지환경을 저해하는 주변 공장시설 등이 가장 큰 해결과 제다. 또한 투자 사업비 중 국비 115억 2천 9백만 원은 2012년 10억 원을 제외하면 2010년 이전에 보조받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 재정이 상당부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소래습지 보전관련 정책연구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과 습지보전방안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주변 어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소래포구의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지정범위와 습지생물, 연안 철새, 염생식물 등의 서식현황, 그리고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어업 활동과 소래포구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발전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및 상생발전민관협의체 구성 노력



| 이 한 구 의원 |

추진기간

2010년 7월 ~ 2013년 9월

사례유형

정책연구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운하사업으로 이어진 국책사업으로 정부 계획에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사업 준공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자체로의 이관 절차만 남아 있는 시점에 지역 통행로 단절, 사고위험 확대, 수질 악화 등 각종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을 가져와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또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년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2013.2.1)를 구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시설물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8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추진내용

· 경인아라뱃길 관련 상임위 활동사항(2010.7~2013.1)

본 의원은 2010년부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4건)과 5분발언(2회)을 통하여 전체의원에게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보다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경인아라뱃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인천광역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한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폭제가되었다.

또한 소관 상임위활동 중 총 14회의 경인아라뱃길 관련 질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개선요구,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마련 촉구, 문제해결 전 인·허가 처리 중지 요구 등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제197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 특별위원회 추진사항(2013.2.1.~2013.9.30.)

그동안 5차 특별위원회 회의와 현지시찰, 주민 토론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총 5회)
- 1차 회의(2013.2.1.) :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외 3건
- 2차 회의(2013.2.19.) :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3차 회의(2013.4.18.) :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차 회의(2013.7.10.) :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외 1건
- 5차 회의(2013.9.25.) : 경인아라뱃길사업 이행합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 · 가담회 개최(총 4회)
- 1차 간담회(2013.2.7.): 관계부서 업무보고 및 향후 특위일정 협의(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민 간담회(2013.3.11.) :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계양구청 영상회의실)
- 국회의원 간담회(2013.4.17.) : 경인아라뱃길 사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국회회관)
- 2차 간담회(2013.9.12.): 아라뱃길 쟁점사항 합의결과 논의 등(특별위원회 회의실)
- · 현지시찰 실시(총 1회)
- 경인아라뱃길 현지시찰(2013.2.26.) : 경인아라뱃길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관련 시설 시찰(경인아라 뱃길 사업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 · 토론회 개최(총 1회)
- 토론회명: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13.3.29 종합문화예술회관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 토론 참여자 : 이한구 특별위원장 외 8명
- · 실무협의체 회의(총 3회)

- 1차 회의(2013.5.22.) :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국회 회의실)
- 2차 회의(2013,6,27,): 합동점검 실시결과 반영 중 이견사항 협의조정 등 (아라뱃길사업본부)
- 3차 회의(2013.7.11.): 합동점검 실시결과 미반영사항 협의 조정(아라뱃길사업본부)
- · 기타활동 사항(총 5회)
- 2013.5.22. : 아라뱃길 평가토론회 참석(국회 소회의실)
- 2013.6.10. : 아라뱃길 관련 국회의원과의 주민간담회 참석(계양1동 주민자치센터)
- 2013.8. 9.: 아라뱃길 현장점검 참석(아라뱃길사업본부)
- 2013 9 9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토론회 참석(국회 소회의실)
- 2013.9.13. :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인천교통방송)

강조하고 싶은 점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주민불편사항과 시설물 이관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 준공에 필요한 행정절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동제설시스템 설치를 비롯해 주민들이 수년간 사고 위험에 노출돼 끊임 없이 요구한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개선 공사 조기 완료와 기존 마을길이 대형차량 우회도로로 변형된 황어로 확포장 공사,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도 병행 처리키로 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던 교통 및 도로단절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였다.

추진(기대) 성과

특별위원회 활동 중 구성한 실무협의체에서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236건의 개선사항을 토대로 3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지역 활성화(친수도시, 물류, 레저·관광) 방안 및 하천수질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약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건의 개선사항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시설보수 및 경미한 사항은 올 10월 말까지 조치하고 예산반영 및 설계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 3월까지 조치완료하기로 하고, 35건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다남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와 시천공원 내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아라뱃길 주변 장기운하도시 구상 중 선도사업과 정서진 편의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침체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괄목

할 성과를 거두었다.

경인아라뱃길 수질 오염의 주요원인인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전량을 별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굴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합의하고 바닷물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비롯한 아라뱃길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공동 모니터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계양구, 서구는 사업준공 후 주민대표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질 개선 노력을 비롯하여 실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확 인하고. 미해결 건에 대한 업무협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공 후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일부가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 해결과 날로 악화되는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인천시의회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려웠던 점

본인은 의원이 되기 전인 2000년 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위 사무국장과 2010년 경인아라뱃길비상대책 위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문제예방에 힘써왔으나,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과 위험이 노출된 상태로 공사가 완료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이 생기는 난제였다.

국책사업의 의제처리에 따른 지자체의 권한 미비로 주민의 피해대책 요구와 지자체의 보완 의견이 상당수 미반영 되어도 행정처리를 해줘야한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한 주민간의 찬, 반 및 단체간의 찬, 반 대립 등 지역사회 갈등이 유발된 사업이라는 점이 문제해결 접근에서 어려웠던 점이다.

보람

우선, 지속적인 문제해결 촉구와 의회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인가처리 중지를 요구하며, 한편으로 의회 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해당지역 국회의원실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수공과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중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장기적 해결을 요하는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해 합의를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지속돼온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의 피해 대책 차원과 지자체 부담 가중을 줄이는 개선책으로 합의하고, 향후 합의사항 이행과 수질관리, 경인아라뱃길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관련 지자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인아라뱃길상생발전민관협의체'를 구성 · 유영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개통 1년이 지난 현재 아라뱃길은 홍수 예방에선 합격점을 받았으나 물류 운송 기능은 당초 예상 목표 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아라뱃길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양 한 항로 개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뱃길을 이용해 수도권의 가장 가까운 물류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켜 연안운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아라뱃길은 유수가 느려 정체되고,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와 굴포천 오염수가 유입되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2급수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라뱃길 수질을 담보하고 있는 굴포천은 3개 시·도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고 있어 관리주체 모호로 통합관리가 어려운 만큼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수질문제 해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천 남·북의 양쪽 2km이내 지역 50%이상을 포함해 10만㎡이상 면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변지역 발전구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살린 체계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서진 일대 주민 편의시설(수산물센터 등) 확충과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직접적 편익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 장기운하도시 선도사업은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

준공 후 인천시로 이관되는 도로·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법 지원근거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국가 하천인 경인아라뱃길의 모든 시설 관리는 정부에서 맡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천시는 인수인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뱃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테마꽃길,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 인천, 경기간 수변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공연, 공동축제 등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아라뱃길 사업준공 후 실무협의회 합의결과 이행사항 확인과 공공시설물 관리, 수질개선 문제해결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 주민대표 및 환경단체 등이 『상생발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안전망 설치, 황어로 확·포장 및 계양지역 교량 유지관리비 지원을 요구하며,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시행



| 김 보 현 의원 |

추진기간

2010년 8월 24일 ~ 2014년 2월 현재

사례유형

정책연구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대두되는 정책현안들을 잘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다루어야 하는 정책문제들이 복잡해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지방의회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자(policy-maker)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볼 때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소통강화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권력이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와 더불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미흡도 주요원인 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6대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의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전문성 강화와 소통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발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추진내용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 소관업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전체회의와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범위의 의정활동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6대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전문성 강화와 소통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발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선임된 시민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 30명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의정활동 자문과 정책대안 연구, 창의적 의제의 제안 및 토론 등이며, 정책위원은 30명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분과별 2명이상으로 각 6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또한 전체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소집요구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연 6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 개최하여 지역 현안사항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점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책네트워크의 성공적운영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추진(기대) 성과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2011년 3월 시작하여 2011년도 29회, 2012년도 15회, 2013년도 20회 등 현재까지 총 64회의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현안에 대한 대안모색과 수십 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실제로 각종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회의 정책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회와 지역사회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총 64회의 정책회의에서 67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4건의 정책대안이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제2순환도로 통행료지불수단 다각화 방안 등 3건이 집행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현황분석 등 5건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의 심도 깊은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 18건의 정책대안들이 추진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마을별 여성지원센터 설치방안,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등 23건의 정책대안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 긴급재난구호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향후 정책네트워크의 내용을 더욱 강화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정책네트워크 정책대안발표회 및 정책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연중 정례화하여 제시된 대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성 과가 더욱 축적되면 타 시·도의회에도 전파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모범 사례 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은 의회의 정책자문기구이며, 피동적인 자문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추구'라는 지향점을 명칭에 담고자 하였다.

처음 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되면서 몇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의회운영 틀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일 치되어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었으며, 정책위원들의 소중한 대안제시와 충고가 더해져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정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위원들이 주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여론, 동향 및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좌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고, 인적네트워크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책네트워크는 의회가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의정활동에 정책위원들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의회의 전문성 향상 및 정책의회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는 방대한 범위의 의정활동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연구 및 자문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분과별 네트워크 회의와 병행하여 1년에 1~2회 전체 네트워크 위원 워크샵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른 분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영구임태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정



Ⅰ문 상 필 의원 Ⅰ

추진기간

2011년 2월 ~ 2012년 1월

사례유형

자치법규 조례 제정 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영구임대주택은 최하위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장애인 등이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최저소득계층의 집 단주거지역이라는 인식과 주변 아파트지역과의 갈등,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거환경, 회적복지서비스 체계의 미흡, 열악한 문화적·교육적 환경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 등 전반적인 삶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역시 슬럼화 경향과 함께 빈곤문제, 안정적인 가족 구성문제, 청소년 · 아동의 교육 및 복지 문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활시설 및 환경의 악화와 입주민의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사회적 소외 현상과 빈곤의 세대적 재생산은 입주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통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추진내용

영구임대주택의 제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광주광역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지원법」을 통해 재정지원, 입주민 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방안 등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정부와 LH 공사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역할분담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영구임대주택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적절한 역할분담 속에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의 제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지자체가 지역 및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조례는 2011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공포까지 약 10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최초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22일 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5월 실무추진기획단 활동, 6월 1일 정책 토론회, 7월 한 달 동안 실태조사, 10월 10일 실태조사 보고회, 10월 11일부터 6차에 걸친 지역순회 주민 간담회, 10월 24일 조례안 확정을 위한 종합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1일 공포되었다.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기초로 하는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 되었으며, 조례 제정 과정에 시의원 6명,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 광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영구임대 아파트 내 복지관, 관리사무소, 입주민, 시 집행부 등의 광범위한 참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의회 자치입법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기대) 성과

광주광역시 차원의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후광주광역시는 5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6개소에 「주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9억 원을 확보하여 영구임대보증금의 50%이내에서 4년 이내 무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 신설과 「정신건강・알코올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사랑방」에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 1주기를 맞아 2013년 9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2014년 예산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했으며, 2년이 경과한 2014년에는 조례시행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그간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기요금이나 시설 개선 등 입주민들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할 당시 LH공사와 광주시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타 지역에 선례도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광주에 있는 10개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들과 관리사무소,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주택공사 등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다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 준비를 시작해서 조례가 공포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Ⅰ서 정 성 의원 Ⅰ

추진기간

2013년 4월 15일~2013년 6월 17일

추진동기 및 배경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은 규범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적극적인 자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례의 규범력은 법령의 그것과 필적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조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 그때 제정되어서 제정되자마자 그 규범력을 상실하는 조례, 법률의 질이 매우 의심이 되는 조례 등 법률의 양과 질을 둘러싼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하는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사후입법평가를 통하여 과도한 입법에 대한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한시조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내용

- · 2013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연구과제 제출
- · 2013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의안 제출
- · 2013년 6월 4일 법무담당관실 법제처 질의회신
- -제주도 자치입법 평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조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광주광역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 · 2013년 6월 10일 평가년도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해달라는 집행부 견해에 대하여 의회의 운영상 2 년이 적합하다는 견해 전달
- · 상임위 통과 전까지 집행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표명
- -전국에서 최초 조례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 입장 고수
- · 2013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제2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 -법령상 제정된 조례는 신속한 위원회 설치와 예산 집행 현황이지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정반 대로 행하여짐. 따라서,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상관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는 상임위 발언 후 통과
- · 2013년 6월 17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후 제정
- · 2013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선정하는 모범 조례상 수상
-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688건 중 4건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추천 또는 제출을 받지 않고 연구 소에서 직접 조사 및 평가
- 수상이유
- -국회나 중앙정부, 학계에서 장기간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 제도로 이미 시행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 2013년 9월 27일 경기도의회「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

강조하고 싶은 점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는 국회나 중앙정부, 학계에서 장기간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 곳도 제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여부,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사후입법평가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점을 본다면 전국적으로 사후입법평가 조례가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제정이 되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곤고히 해야 될 것이다.

추진(기대) 성과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의 시작과 비교한다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는 동안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정책과 사업 및 예산 등을 분석하였을 때. 지방자치가 2

할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직도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은 요원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의 한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는 의미 가 더욱 크다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른 법적 · 의무적 조례 시행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적극적이지만 의회에서의 연구로 비롯된 조례들의 시행에 있어서는 발의한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거의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방법을 조례를 통하여 정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및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는 국회나 중앙정부, 학계에서 장기간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 곳도 제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여부,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사후입법평가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득시켰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하기까지 집행부와의 마찰은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집행부에서는 법제처 의견이라고 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분석해본 결과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와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나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였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내용 중 제6조 2항에서 평가기준을 '2년마다 실시'를 '3년마다 실시'로 변경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의원의 임기가 4년인 만큼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조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하여 '2년마다 실시'로 명문화하였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한양대와 독일나우만 재단이 선정하는 '모범조례상'에 선정되자, 본의원의 조례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조례들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는 보람을 느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전국 최초 조례인만큼 입법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타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하루 빨리 도입을 하여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입안되는 법적·의무적 조례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삶을 파고든, 지역 맞춤형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 황 경 식 의원 -



| 황 경 식 의원 |

추진기간

2012년 3월 ~ 2013년 11월 현재

사례유형

자치법규 제정 및 지속 추진을 통한 실효성 확보

추진동기 및 배경

현 세대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며 현세대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서로 신뢰하며 풍요로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줄 의무와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한정된 자원과 자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유형의 자산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분열과 갈등으로 입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삼속에 파고들어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이 조례 대표발의의 동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수준이 높다. 그양상도 과거 님비(NIMBY)나 단순 지역갈등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분쟁요소가 생기면 지역·계층·이념·세대간 분쟁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BK21 갈등사회교육연구단이 실시한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9.6%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만 해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연간적게는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조직 내부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는 시장경제의 역기능인 개인 간 이기주의 심화,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 혈연·지연·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 팽배로 계층간 상대적 빈곤감, 주민간 갈등, 사회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

대젼광역시의회

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처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 배려, 나눔, 소통, 존중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산하며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였다.

추진내용

- 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및 조례안 성안전 지역 내 관련분야 전공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의 10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 1차(2012 9 21) ~ 10차(2012 12 14) 〉
- 2)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대표발의(2013.1.11) 행정자치위원회 심의(2013.1.28) 본회의 의결(2013.2.4) 공포(2013.2.28)
- 3) 다양한 공동체 발굴 · 육성을 위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모이자. 해보자 등 226개 사업 발굴(컨설팅, 참여자교육, 모니터링 지원)
-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집 발간
- 4) 사회적자본 정책확산 업무협약 체결 및 포럼 개최
- (재)한국 선진화포럼과 업무협약(2013, 5, 10), 사회적 자본 포럼개최(5회)
- 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2013, 7, 26) 및 수탁자 선정(10, 1)
- 6)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실과별 단위과제 추진실태 지속 점검(2013. 8. 23 ~)
- 7) 민관협력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본격운영(2013, 10, 28개소 / 2팀 6명) 등
- 온라인 포털 구축, 민관합동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가동, 전략세미나 개최

강조하고 싶은 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점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조례 안을 성안하여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장기비전에 맞춰 「의회 — 집행기관가 협력모델 을 제시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역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법령공백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령 및 타시도 입법에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언론으로부터도 지역 맞춤형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치법규 입법화과정에 충실을 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조례 제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나온 산물로, 이미 2012년 9월 '사회적자본개발센터'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비롯하여, 지역과 중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정책 콜로키움 참여자(학계, 직능·사회단체, 시민·풀뿌리 단체,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10차례에 걸친 워킹그룹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조례라는 그릇에 정책적 함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타 시도 및 일반적 제도화 과정과 차별성을 갖는다.

입법의 실효성확보측면에서도. 일회적으로 추진될 사항을 담은 것이 아니라 실천전략별로 정책과제를

정하여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기반을 둔 지원체계에 따라 비전과 목표에 의해 단계별 실천전략을 세워 연차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실천운동으로 삼고 실행에 옮겨가고 있어, "살아 숨쉬는, 그리고 시민의 삶을 파고든" 법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추진(기대) 성과

입법화 단계에서 초창기의 부정적 시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성과 창의를 가진 다양한 대전시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시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이후 제도적 근거에 따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자본 지원연구센터 등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되고 있다.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공동체를 형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지역과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대전자원 나누기'와 대전시민의 고유한 공동체 이웃사랑 실천문화를 확립하는 '대전사랑 나누기'를 통해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 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가정친화 문화확산,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입법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총합의 산물이다. 그동 안 시정질문, 입법 및 행정사무감사 등 정책활동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의 대부분을 담을 수 있는 총합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1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제·개정을 한 바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조성, 문화격차 해소, 시립미술관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통한 대전시민의 동질성 회복, 용역관리를 통한 투명한 행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장, 의정자문위원회 위원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다. 지역차원에서 나눔과 배려, 신뢰문화 확산에 노력한 의정활동 총합의 산물을 만들었다는 보람이 있다.

새로운 지역형 정책모델 제시함으로써 지방주도의 정책 조기선점에 기여하였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접목한 전국 최초의 작지만 소중한 '새로운 지역형 정책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중앙과 전국에서 주목하는 지방주도의 정책 조기 선점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민의정」의 표본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선도한 점이 보람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힐링(healing) 시책을 사회적 자본 확충과 연계추진, 신뢰와 배려의 대전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조례를 성안하면서 나를 위해 흘렸던 땀을 이웃을 위해 흘리는 일이 곧 나눔의 시작이고. "나눔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닌 평범한 대전시민의 특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잘 집약되었고, 또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대전이라는 도시마케팅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새로운 협력모델 제시」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의회와 집행기관 등 이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성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모두가 공감하는 테제인 사회적 자본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행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조례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가 중시되기 전인 조례안을 성안과정에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센터나 연구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 조정과정에서, 그리고 발의 초기단계에 정당별 시각차이로 자칫 집행기관의 선거나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인해 대표발의의원 입장에서 대 언론홍보 및 시민공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앞으로 낡은 관행을 버리고 정보공개, 재능공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대전자원 및 대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당분간은 저성장기조 속에 열악한 지방 재정적 여건으로 불씨를 지피고 키우기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서히 시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 구축한 지원센터 설치 및 토대마련,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센터의 가동 및 지표개발 등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성과지표 측정 등 시민 역 량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15년에는 성과지표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확산함으로써 신뢰와 배려의 공간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일회적·단발적 추진사업이 아니라 단계별 실천전략에 따라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감하면서 실행에 옮겨가야만, 후대들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속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조직까지 깊숙하게 뿌리내린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부끄러운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므로 각 지역별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각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좀 더 발전적인 조례를 제정할 것을 고대한다.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더욱 값진 장애인관련 조례



ㅣ류 경 민 의원ㅣ【

추진기간

2011년~2012년

사례유형

자치법규

추진동기 및 배경

많은 사람들이 울산하면 부자도시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

전국 1인 GDP가 가장 놓은 도시,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그러나 울산의 복지, 문화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특히 장애인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로 2011년 울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조례 제 \cdot 개정 모임을 만들었고 저와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다.

당사자들과 함께 하면 공부도 되고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함께 하기로 하고 모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에 하나의 좌표가 만들어졌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다.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조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만3년 동안 7개의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7개의 조례 모두 저 혼자 만든 것이 없다.

모든 조례를 당사자와 단체들과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조례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으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위민의정대상 사례집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이 가고 소개 하고 싶은 조례들이 바로 장애인 관련 조례들이다.

가장 먼저 만들기로 한 것이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다.

울산에는 약 5만 명의 등록된 장애인이 있다. 이들 가운데 10% 이상이 1, 2중증 장애인들이다.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이유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보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제도와 이동에 편의를 주기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제도가 마침내 도입되기도 했다.

추진내용

·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에게 "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을 누려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받아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장애가 심할수록 혼자 자립해서 산다는 것은 꿈조차꿀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꿈'을 꾸기는 커녕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집으로 여겨지고 심한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일시적인 도움만 제공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의존적이고 수동 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외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극장에도 갈 수 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 장애인단체들과 자립생활지원조례 팀 구성

울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지난 2006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늦게 만들어지는 조례이니만큼 다른 지역의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자 생각하여 장애인 단체들과 전국 다른 지역의 조례를 공부하고 울산의 조례안을 함께 만들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팀'은 울산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시각장애인여성회, 울산장애인여성회, 류경민 시의원으로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가 모두 포괄되었으며 주1회씩 모여 함께 다른 지역 조례를 연구하고 울산의 조례안을 함께 성안

하였다. 이 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회 직전에는 기자회견까지 하여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다.

· 다른 시도보다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내용 강화

본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비전에 걸 맞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 도록 조례로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울산시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계획 즉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장애인 간 동료상 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보조공학 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장애여성의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해줄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에 필요한 상담, 자조모임 등도 실시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센터가 서울에 24개소, 부산 7개소를 비롯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대전에도 6개소가 있고 광주에도 5개소가 있다. 전국 특·광역시는 각 구(區)에 1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은 광역시 전체에 1개소 밖에 없어 울산지역의 장애인들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울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늦었다.

그런 덕분에 잘 만들어진 조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에게 꿈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지원금,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자립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얼마전 부산에서 장애아이를 키우신 분을 만났는데 아이를 자립홈에 보내는 데 3000만원을 내었다는 말을 들었다. 현재 울산은 이 조례에 의해 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강조하고 싶은 점

저는 작년 한 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많은 조례를 발의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살예방 조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성평등조례, 도시농업지원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조례들이 모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조례들이다.

단 하나의 조례도 그냥 혼자가 아닌 단체. 당사자들과 준비했기에 의미가 깊고 내용이 알찬 조례라고 내

세울수 있을 것 같다.

자살예방조례는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생명의 전화등 11개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3년간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예방네트워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제가 올해 '한국생명사랑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또한 학교 밖 지원조레는 울산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안학교들과 함께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성평등조례는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었다. 전국에 많은 조례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의원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감히 시민들과 당사자들과 단체들과 의논하지 않고 의원 혼자 하는 의정활동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젊은 초선의원이라 경험없고 잘 몰라 단체들을 찾아다니고 당사자들과 모임을 만들어 해왔던 열정이 이 제 의정활동의 좌표가 됐다.

앞으로도 저의 좌표에 충실히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추진(기대) 성과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세워졌으며 이후 5년간 1260억의 예산이 투입돼 실행될 예정이다

【별첨】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13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

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3. "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 5. "장애인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6. "주거생활지원"이란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 분양·입주지원, 주택의 개수·보수 비용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과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 2.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 홍보사업
- 3.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 4. 보조공학 기구 등 재활 보조서비스
- 5. 장애여성의 출산, 육아지워 서비스
- 6.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전공교수, 장애인당사자,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분양·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활동



| 박 영 철 의원 |

추진기간

2012년 10월 ~ 2013년 12월

사례분야

주민참여분야 등

추진배경

울산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 특히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 \cdot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 발생

추진상황

- · 2009. 3. 30 : 울산소년재판부 설치요청(울산지방법원→법원행정처)
- · 2009. 4. 13 : 홍혜랑 부산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협의회 울산지회장
- "소년재판부 설치 1만명 서명지" 전달(지회장 → 시장)
- · 2011. 9. 20 : 정갑윤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시
- 가정사건 증가에 따라 "울산에 가정지원 설치" 요구
- · 2012.10. 5 : 울산유치위원회 구성 · 운영(18명)
- 정희권 위원장, 박영철 시의원 등 17명 위원 선임

- · 2012.11.8 : 울산유치위원회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 · 2012.11.23 : 정갑윤 국회의원,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발의
- · 2012.11.27 : 울산시의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박영철 시의원 대표 발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 · 2013.4.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개최
- · 2013.6.11 :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 토론회 개최
- · 2013.9.9 : 국회 청원서 및 대법원 건의서 제출
- · 2013.12.19 :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울산소년재판부 설치 : 2014.10.1.(2014.8월 신청사 준공 후)
- 울산가정법원 설치 : 2018. 3. 1

추진내용

- ① 울산유치위원회 구성 · 운영
- · 구성일자 : 2012, 10, 5
- · 구성인원: 18명(위촉직 15. 당연직 3)
- 정희권 위원장, 박영철 시의원 등 17명 위원 선임
- · 주요내용 : 결의문 채택, 서명운동 전개 등
- ② 울산유치위원회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 · 제1차 서명운동: 2012, 11, 8, 롯데호텔
- 참여단체: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산가정법원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등
- · 제2차 서명운동 : 2012. 12. 5, 울산지방법원 앞
- 참여단체 : 울산지방변호사회

· 제3차 서명운동 : 2013. 3. 4. 울산대학교 내

- 참여단체: 부산가정법원 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시민서명 실적〉 - 2013. 7. 24 현재 총 10만 8908명 서명 (목표 10만명 대비 109%)

③ 정갑윤 국회의원,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발의

· 관련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발의일자 : 2012.11.23

· 발의자 :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정갑윤, 강길부, 이채익, 박대동, 김기현, 안효대, 문대성, 강기윤, 윤영석, 김태환 의원)

·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 12, 19,

④ 울산시의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발의일자 : 2012, 11, 27

· 발의자 : 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 촉구내용

- 1. 국회·대법원·정부는 관련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2. 각 정당은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 ⑤ 기타사항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개최(2013, 4, 22)
- ·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 토론회 개최(2013. 6. 11)

강조하고 싶은 점

- · 광역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고등법원(원외재판부)이 없는 곳은 울산과 인천뿐이며(인천은 서울과 인접), 120만의 광역시로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규모, 역할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실하다.
- ·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사법적 판단 외에 전문 조사관 등을 두어 심층적으로 상담, 조언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돌보는 사법』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울산에서도 이혼 및 소년범죄 등 가사사건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청소년과 가족들이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 2006년~2011년 보호관찰건수 비교결과, 타 광역시는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15.0%)과 광주(5.5%)만 증가추세

추진(기대) 성과

- · 울산시민과 유치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울산소년재판부(2014, 10, 1,) 및 울산가정법원(2018, 3, 1,) 설치 확정

향후 과제 및 제언

- ·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속 추진
- 현재 특·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를 추진하되. 대법원의 조직개편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시 추진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 김 부 유 의원 |

추진기간

2011년 01월 ~ 2013년 10월

사례유형

조례제정

추진동기 및 배경

도·농 복합체에서 신도시로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도 외형이나 내형이 더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도출 되고 있다.

첫째로 늘어나는 인구수의 비례해서 청소년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 만큼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이 도시의 학교에서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세종시 신도시와 구도시의 삶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궈지고 있다. 그 안에서 신도시가 추구하는 복지영역과 구도시의 삶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영역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 행정부가 하고 있던 역할들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잦은 이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로 나라와 지역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삶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인의 역량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행정사무 업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의원들만의 의회가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요구되고 있다.

추진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설립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의회, 집행부, 교육청, 시민이 함께 하는 정책연구회를 구성 하여 대표의원을 맡아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 방안 및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토론회 도·농 복합체에서 신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이 도시의 학교들에서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모든 어른이 책임이라는 생각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 ·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로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과 함께 소통 지난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의정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방향을 밝혀 공약실천 의지를 표명함.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시민 과 함께 소통해 시민을 위한 지방정치를 할 것을 약속함.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안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등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발의 보육조례안 목적, 군의 책무 등 총칙을 규정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등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등을 규정,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하 제반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함.
- 연기군 농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기군 소재 기숙형 고등하교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고용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전입을 유도하여 세종시 중심행정 지역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명문학교의 육성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복지지 원서비스가 필요함
-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유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세종시 관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중 노후, 공간협소 등으로 신축지 원이 필요함에도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의 형평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 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후화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 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함.
- · 연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연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위원의 위촉절차 명확히 하여 위원회 설 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효행장려금 등 수급 대상 자가 신청하게 함으로써 본인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발의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 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정의하고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발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으 로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 지원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와 발전에 이바지하여 단체가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개함.
- ·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발의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지역사회 행정 및 복지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함으로 시민의 의 견 대변하는 적극 활동

- 1. 청소년들의 의향이 적극 반영 된 청소년수련관 설치
- 2. 세종시 안의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원 놀이터 시정정비 촉구
- 3. 정례적인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상시 소통하고 국가정책등 국비 확보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정발전 정책협의회 구성 촉구
- 4. 명품 세종시의 기초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 "범죄예방용 CCTV" 추가설치
- 5. 현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정원 등과 추가 기관 등에 우선 임대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 사용제안
- 6.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의 세종시 보육정보센터의 조속한 설치 제안
- 7. 관내 여학생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책 수립 촉구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안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지역사회안에서 선거와는 조금 떨어진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및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주변의 지인들의 말이 많았다. 이왕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으려면 유권 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들 때 고민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이 되기 전 청소년지도,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복지사업단체의 지부장 등 청소년들 위한 위원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을 이땅의 그리고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로 역량있게 키우는 것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소신을 버릴 수 없었고, 의정활동을 위한 지역구를 돌아다닐 때 청소년행사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반갑게 아는 척 인사를 할 때 이 길을 선택한 것에 추호도 잘못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명품 세종시 건설에는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주민 친화적 일들이 더 많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에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청취하며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하여 겉모습이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조례제정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의결까지 거의 혼자서 준비하고 일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연구하는 지방의원, 발전하는 지방자치



Ⅰ조 양 민 의원 Ⅰ

추진기간

2010년 7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사례유형

정책연구 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본의원은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제7대(2006.7.1~2010.6.3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수석대변인, 운영위원회 위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남북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2010년 7월 재선되고 보니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이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들에게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일이 많았다. 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국에 비하여 역사가 짧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과 아직까지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남성들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130명의 의원 중 여성은 18명뿐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의원은 제8대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상반기에는 새누리당 간사, 하반기에는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세정, 인사, 자치행정, 소방행정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와 아주 밀접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가 중앙 집권적인 구조이 므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연구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제

경기도의회

시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10년도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 자치발전연구회」를 결성하고, 본의원이 회장을 맡아 연구용역,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추진내용

1. 전국 최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다

2010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년까지 발의한 의안은 총 48건이다. 이중 대표발의한 의안은 총 4건으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 2011, 03, 15)」,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안(공포 2011, 04, 07)」,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포 2013, 08, 05)」,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 2013, 08, 05)」을 대표발의하였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는 조례는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 · 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현재 4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도 신 성장동력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의원은 2012년 12월 23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곤충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의 식용 가능한 곤충은 1900여 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곤충을 식품으로 먹고 있다. 이미 호주, 일본 등에서도 관련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자원 조사, 유용곤충의 발굴, 곤충자원의 상품화 R&D 강화 등에 2015년까지 1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곤충은 해충방제, 화분매개 등 다양한 용도로 생산·판매됨에 따라 소득증대와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고, 생태학습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곤충을 이용한 관광축제 등 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곤충으로부터 추출된 기능성 물질을 활용하여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당시 경기도에서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의원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13년 5월 27일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곤충자원의 산업화 기술개발, 곤충생산단지와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곤충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례로 본의원은 2013년 9월 27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나우만 재단 한국대표(앙드레 리히터)가 수여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상'을 수상하였다.

2. 경기도민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경기도에는 외국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에 대한 인권조례는 있으나 전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없어서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였다. 현재 인권에 관한 업무는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심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2013년 5월 27일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인권보장 관련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여 경기도민의 인권보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발전연구회 를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010년 10월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조양민)"를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주관으로 2011년에 "주요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2012년에는"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를, 2013년에는"SNS를 이용한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와 함께 "주요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비용 및 출산수당 지급, 민간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가인증 방법 관리, 도내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 거점 지원, 기업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 브 지원, 육아 종합지원 코디네이터 등 육아인력 양성, 노인 일자리사업 강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보완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용역결과물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2011년 7월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아주대학교 공공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소방공무원에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소방공무원은 남성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화재진압과 119구급대원 등 거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조양민)」에서는 경기도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경민대학교와 함께 "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2012년 12월 10일 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내용은 경기도 여성 소방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여성 소방공무원의 업무영역과 직급별·계급별·연령별·보직별, 근속 연수별 남·여 현황을 파악하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무실태, 임용 및 보직의 특성, 교육 및 훈련, 복지실태 파악 및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무실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시한 내용은 여성 소방공무원을 위한 휴게 공간 확충, 육아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부부 소방공무원을 집과 가까운 관서로 인사발령, 여성 소방공무원이 남성 소방공무원과의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 시간 보장, 여성 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문에서 일방적인 소통에 국한되고 있고, 조직적인 대응이나 채널구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으므로 주민과의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조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소통은 어려워지고 있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SNS를 이용한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의 가치공유와 성공적인 대화선정 및 대화참여에 대한 책임감 조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비밀누설금지, 이해관계당사자에 대한 존중, 실수에 대한 솔직한 사과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들에게 SNS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다.

2010년 7월 28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10 서울시립대 국제여름학교」가 주최하는 아시아의 정치리더십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여성과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성평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일·가정 양립에 따른 고충, 남성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연하였고(수원일보 보도). 2011년 10월 4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용인신문에 기고하여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으로 출산과 육아를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의식개선을 주장하였다.

2012년 4월 16일 ~ 19일까지 미국여성정책연구소가 하와이 호눌루루 칼피올리나대학에서 개최한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4개국 여성리더가 참여하는 '다학제간 지적교류회의'에 한국 지방정부의 선출직 여성의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근로를 위한 이주여성의 원인과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 등에 관하여 4개국의 상호 연관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제기하여 학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 간의 의견교환과 행동계획 수립을 논의하였다.

2012년 8월 22일 「일본 여성인권 NGO」를 경기도의회로 초청하여 경기도의 여성정책 중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예방과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보호와 권리 증진, 일본군 위안부할머니 지원, 다문화 인권 정책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간의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2012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어언대학교 초청으로 여성지방의원 20여명과 함께 한국 내 중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징 교육부와 칭화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새로운 교육 특구로 명성이 높은 안후이성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조하고 싶은 점

지방자치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주민이 원하는 일,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서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의원의 경우 지역구활동은 물론 의원연구단체와 경기도의회 자료실을 이용하면서 정책을 연구·개발하였다.

추진성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지난해 6개사업 11억원에서 2014년에는 8개사업 16억원을 확보하였고,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정책만 추진하였던 경기도에서 일반 도민의 인권보장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도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안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2012년 5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을 모집하여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실시하였고,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정착과 가족친화경영의 실무지식을

전파하고자 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 기에는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 일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된 내용은 여성 소방공무원 휴게실을 166개 기관(소방재난본부+북부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총 면적 3406.3㎡를 설치하였고, 여성공무원은 육아 등을 위해 부부 소방공무원 266쌍 중 88%인 236명을 집과 가까운 인근 소방서로 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성소방공무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승진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이 부족하여 남성 공무원과 비교하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나 여성 소방공무원이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따라 2013년도에는 2011년(142명)보다 30%가 증가한 184명이 집합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소방업무의 특성상 화재진압 중 또는 구급활동 중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을 많이 접함에 따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와 전문병원 32개소가협약을 체결하여 치료하도록 하였고, 소방서와 정신보건센터 37개소가 협약을 체결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보람 및 애로사항

전국최초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동 조례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이달의 모범조례상"을 수상 (2013.9.27.)하였다. 지금은 본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모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곤충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곤충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에 의뢰하여 곤충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

또한,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8대 개원부터 7회에 걸쳐 중앙정 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안을 보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않고 있다.

향후과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안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현안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도입 지원외 2건



| 김 동 일 의원 |

추진기간

-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편의제공: 2011~계속
- ·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 1 ~ 2013, 12(1년간)
-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관련법규」개정 추진: 2005 ~ 2012(8년간)

사례유형

자치법규제정 및 정책연구기능

추진 동기 및 배경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강원도 특성상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노출되어 강원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과소화 또는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학생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만 6500명으로 강원도 인구 중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단위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한 실정에 있어 향후 자력피난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노약자 등 화재취 약계층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소방안전 여건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주택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고취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도시철도 승차시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원도의회

추진 내용

-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도입 지원
- 2011. 3, 18: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도정질의)
- 2011. 3. 24 : 노약자 및 어르신 대중교통이용 승하차시 불편함 개선 제안 (5분자유발언)
- 2011. 6. 27: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지원
-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2013. 3. 7 :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2013. 4. 16 : 제22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 2013. 4. 29 :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 2013.9.2~9.24 : 강원도민(4만 4880명)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전개
- 2013. 9. 3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참여 현안의제 논의
-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관련법규」개정추진
- 2012. 4. 30: 「강원도내 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 발의
- 2012. 5. 10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가결
- 2012. 5. 23: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강조하고 싶은 점

제8대 의정활동기간 중 서면질문 22회, 도정질문 9회, 5분자유발언 7회, 연구회 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성과

-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대중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발급(5만 6177명)지원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불편해소로 삶의 질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강원도 작은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재정적 지원기반 마련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수 증가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했다.
-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보급을 통해 화재로부터 예방하고 소방안전 의식확산에 기여했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후 폐교위기에 몰렸던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외국어, 골 프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때 조례제정 발의를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뻤다.

특히, 장애인 고령 등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하여「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발급(5만 6177명)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약자가 크게 감소한 점에 대하여는 도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다소 어려웠던 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어 자료수집에서 입법활동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나, 다행히 도의회 입법지원 부서와 집행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업은 도·시군 관련부서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강화와 더불어 문화·체육의 중심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보급률(현 21%) 제고를 통한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도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개발연구



| 장 선 배 의원 |

추진기간

2012년 11월 ~ 현재

사례유형

정책연구

추진동기 및 배경

개인 삶의 궁극적 이유는 '행복'이며 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표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로 미국 경제학자 이스털린의 역설에서도 증명하고 있듯, 성장 일변도 정책만으로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이스털린(Easterlin)의 역설(Paradox)

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행복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논문에서 인용한 용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비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 지표는 객관화를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민의 주관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사회지표 3차 개편(2004)시 포함된 탈가족화, 노인생활 관련지표, 정신건강관련 지표가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적 현황 지표가 아닌, 주관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복지수와 삶의 질 영역별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해 도민들의 주관적 상태를 조사·분석하고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

인에 따른 주관적 상태점수의 차이에 기초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충북도민 행복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내용

- ·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부합한 행복지수 및 삶의 질 조사도구(지표) 개발
- ※ 국외(EU, 일본 등) 및 국내 조사도구, 포다이스 검사법 등 비교 검토
- · 충북도민 주관적 행복 지수 및 삶의 질 영역별 지수 조사 · 분석
- ※ 표본추출(cluster sampling 활용), 분석(ANOVA, Crosstab 등 활용)
- · 분석결과에 따른 충북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등

〈주관적 행복지수 및 삶의 질 지수 조사 분석결과〉

- ① 충북도민의 행복지수 56.1점
- 충북도민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56.1점으로 대구광역시 61점, 서울시 66.5점, 전라북도 65.0점, 광주 광역시 66 1점과 비교해도 6∼10점 차이가 나는 상태임
- ② 충북도민 삶의 질 지수 47.0점
- 2013년 충북도민의 영역별 삶의 질 종합 평균값은 47 0으로 2012년 47 3점에 비해 다소 하락함
- ③ 2030세대에 대한 우선적 배려 필요
- 2030세대의 행복지수가 53.9점, 삶의 질 지수는 43.6점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청년 실업률 증가, 대학 수업료와 결혼비용 부담, 내 집 마련 압박 등이 영향을 준다고 보여짐.
- ④ 저소득 계층에 대한 추가 복지 지원책 필요
-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직업군의 행복도가 5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농업인과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각각 52.3. 51.8점으로 나타남.
- ⑤ 주거 안정 정책 필요
- 행복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월세에 사는 사람으로 행복지수가 48.9점이고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들 의 행복지수는 57 8점으로 나타나 8 9점 차이가 남
- ⑥ 군 지역의 행복 정책 우선 시행 필요
- 도시 지역의 행복지수가 더 높고 군 지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5~7점 정도).

- ⑦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원 필요임.
- 삶의 질 영역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문화예술 영역임.
- ⑧ 참여 도정 정책 확대 필요
- 삶의 질 지수 영역에서 사회참여 영역은 삶의 질 지수가 42.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등의 지원 체계 필요함.
- ⑨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 삶의 질 조사 결과 생활경제 영역의 지수는 42 8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낮음.
- 그 중에서도 생활물가 만족도가 39.3점, 창업여건 만족도가 36.1점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 ⑩ 환경과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삶의 질 영역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도민들은 우리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⑪ 건강한 가정 공동체 강화 노력 요구
-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계층은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행복정책 추진방향〉

- ① 통합적 행복정책: 도민들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외부환경을 바꾸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
- ② 행복을 가르치는 행복정책: 다양한 심리학적이고 영성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도민들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노력 선행
- ③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행복정책: 도민들의 작은 삶의 공간에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가꾸는 정책, 관계개선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정책 마련
- ④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행복정책: 부부관계, 결혼, 자녀교육, 부모교육, 가정 문화, 생명문화 등 각종 가족과 관련된 정책 마련
- ⑤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행복정책: 도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NGO 활동 강화, 자원봉사 참여 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
- ⑥ 재생적 행복정책: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개념을 다시 만들어 뼈대를 세우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새롭게 구성

- ⑦ 기본적 삶을 충족시키는 행복정책: 기존의 복지체계와 의료체계를 촘촘히 연결하고 지원을 강화
- ⑧ 삶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행복정책: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에 대한 확대된 정책 도입
- ⑨ 우선적 배려가 있는 행복정책: 행복지수가 낮은 청소년, 청년, 노인세대 등에 대한 우선적 행복정책 마련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 정책과제 제시(50개 사업) : 충북도민 행복교육원 설치, 행복연구소 설립, 충청북도 행복현장 제정 등

〈행복정책 구체화 추진〉

- ① 도민토론회(2013.7.26)시 5대 행복정책 대안 제시
-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후, 도민과의 교감 증진 및 대집행부 정책반영을 위해 2013.7.26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토론회 개최 ※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5대 과제
- 1. '충북도민 행복교육원' 설치 운영
- 2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3. '평생학습 강사 파견'사업
- 4.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및 문화 컨설팅 프로젝트
- 5. 해피 하우스. 해피 충북
- 토론을 통해 충청북도 전략체계도상 가장 중요한 도민의 관점인 "도민 삶의 질 향상" 측정지표를 기존 객관형 지표에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통합형 지표로 개선하는 방안 제시
- ② 자연학습원을 "도민행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
- 화양계곡 소재 자연 학습원(지하2층 지상3층, 360여명 수용규모 재건축)을 청소년 수련활동과 환경
 교육 역할에 국한해 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도민행복원으로서 기능하도록 역할 변화 제안
- 연수대상을 청소년에서 가족, 단체, 집단 등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행복교육 프로그램과 자연 과 함께하는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제안
- ※ 언론 기고(8.27, 중부매일) 및 5분자유발언(10.17, 제324회 임시회) 등
- ③ 행복정책에 대한 개념정립 및 공무원 인식 확산

- 새롭게 대두되는 행복정책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내용을 집행부 전부서에 전파(연구용 역보고서 배포 50부)
- 행복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기고문 게재 (2013.8.6. 중부매일, 장선배의원, "행복지수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
- 행복정책에 대한 공무원 대상 강연 실시(2013.8.26,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④ 제도화를 위한 노력
- 행복정책 관련 조례 제정(2013~2014 기간중)
- 특히, 행복정책의 개발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복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 례" 제정 추진
- ·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원종) 방문, 제도화 건의
- 2013. 7. 26(금).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이 이원종 위원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보고
- 특히,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기본취지 및 시책방향과 부합하는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특별보고 및 지원 건의

기대효과

- ① 도민의 주관적 행복지수 및 삶의 질 지수의 연차적 누적 데이터 확보 현행 충북도민 삶의 질 지표는 객관적 지표(8개 영역, 17개 세부지표)로 산출되고 있으나, 금번 연구용 역은 주관적 지표(12개 영역, 52개 세부지표)를 포함시켜, 도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도를 파악 하고 이를 정책 입안시 반영할 수 있도록 누적데이터 확보
- ②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 제공 연차적 누적 데이터는 도정 각 분야의 행복정책 입안시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새로운 정책 시 행 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자료로도 활용 가능
- ③ 도민 행복을 위한 핵심정책 발굴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민행복 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이 가동되 도록 설계하는 등 도정 각 분야별 핵심정책 발굴(50개 발굴, 이중 5개를 핵심과제로 선정)
- ④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행복정책에 대한 도민 및 공무원의 인식 변화 토론회와 중간·최종보고회 등의 언론보도, 언론 기고, 공무원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행복정책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인식 변화
- ⑤ 도의회의 정책제안에 따른 집행부(충북도)의 조치사항 자연학습원 기능 전환(2014년부터): 청소년수련 중심 → 도민행복증진 중심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환경교육센터로서의 기존 역할에 더하여, 가족·단체 등 도민에게 자연권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도민치유(힐링)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자연학습원의 기능 전환행복정책 관련 정부예산 확보 노력
- 아버지 행복캠프(총 40억원, 국비 30억, 시도비 10억), 청소년·가족 상상 체험관(총 149억원, 국비 98억, 시군비 51억) 등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시도(2014년)
- 기재부도 필요성에는 공감. 설립시기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2014년에 정부예산 확보 예정
- 각종 내부 시행사업에 행복기능 추가

도민행복 증진 관점에서 분야별 기본 시행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 업무계획에 반영(전부서)

보람 및 애로사항

- ① 민간에서 시작한 기초단계의 실태조사연구 수준의 작업을 발굴하여 도의회(정책복지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집행부를 통해 정책화하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
- 2011, 2012년도 충청북도 도민의 주관적 행복도 조사사업(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도의회 공론화(용역발주, 지속적 회의참여, 중간, 최종보고회, 민·관 정책토론회) → 충북도정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충북도민 삶의 질 지표 통합형 설정 제안)
- ※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로서, 행복정책에 대한 제도권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사회적 욕구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모범적 선례로 자리매김.
- ② 용역의 전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용역의 시작, 진행, 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도의회, 민, 관 삼자가 적극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각계의 입 장과 논리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 ③ 도 집행부 및 민간단체간 시각차에 대한 합치의견 도출을 위해 중점 노력
- 도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각 과제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간부문에서는 행복의 개념에 보다 치중하여 기존 정책의 전향적 변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 이러한 민, 관의 시각차를 축소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합치의견 도출했다.

주행사무감사를 통한 충남개발공사 대출 이자비용 37억원 절감(추정액 120억원)



| 김종문의원|

추진기간

2010년 7월 1일 ~ 2010년 12월

사례유형

예산절감 분야

추진동기

충남개발공사의 2010년 7월 업무보고시 대출이자율 6.3%는 시중금리보다 높아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충남도의 신용을 보더라도 개인보다 높은 이자율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할 수도 없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3900억원의 부채와 대출이자 지출이 많아서 이자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현황 및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이자를 줄여서 적자를 보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의 수익을 개선하여 주고자 마음먹었다.

추진내용

충남개발공사의 차입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신 거래약정서 등 각종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농협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충남개발공사가 2008년 6월 도청 신도시 토지보상을 위해 농협에서 차입한 1550억원의 이자율을 조정함. 2008년도 세계금융 위기로 이자가 점점 높아지자 고정금리로 차입한 6.35%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 농협과 체결한 약정서를 분석하여 금리 변동의 예외사정을 입증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협 관계자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농협과 3%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4.3%의 금리인하와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면 받아 대출 만기일(2011년 6월)과 신청사 분양 완료시까지 남은 기간 이자비용 절감 등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약 120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추진경과 및 보고

1. 충남개발공사에 차입금 관련 및 2010년 업무보고(2010, 07 ~ 2010, 10)

충남개발공사의 2010년 7월 업무보고시 대출이자율 6.3%는 시중금리보다 높아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3900억원의 부채와 대출 이자지출이 많아서 이자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현황 및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이자를 줄여서 적자를 보고 있는 개발공사의 수익을 개선하여 주고자 마음 먹었다.

2. 부채현황과 금융권 대출현황 및 여신거래 약정서 요구(2010. 09)

충남개발공사의 부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충남개발공사의 과도한 부채현황과 금융권으로부터 차 입한 차입금과 계약할 때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을 요구하였다.

3. 타시도 공사의 차입금 이자율 조사 및 시중 은행 대출 담당자 면담(2010, 08 ~ 2010, 11)

타시도 의원님들께 전화로 그 지역 공사의 차입금 이자율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같은 기간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이자율이 높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국고채 수익률의 변동상황과 시중 금리의 이자율 및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4. 자료 심층 분석 (2010, 09 ~ 2010, 11)

충남개발공사가 제출한 공사채 발행 현황 및 금융 거래 약정서를 검토 하던중 5년 만기 전액 상환과 국고채 수익률 3년에 이율을 0.6%를 더하여 적용하는 고정금리 약정이었고 이자율의 변동 조항 제3조 5 항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금융사정 및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토대로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신도시 토지보상비 2050억을 산업은행(500억), 농협(1550억)을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2월 18일까지 9회에 걸쳐 평균 이자율 6.35%로 약정한 자료를 받고 당시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적 금융위기 상황이고 당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5.88%로 상당히 높아졌고 이후 2009년 1월에 3.35%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거래약

정서에 명기된 제 3조 이자율의 변동사항의 5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6%대의 고정 금리를 대출 만기일인 2008년 6월 대출일자 3년만기로 1년씩 두 번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5년 내에 전액 만기 상환하여야 하고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금리를 마땅히 인하하여야 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5. 농협 관계자 행정사무 감사시 출석 요구서 발송(2010, 10)

충남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토지 보상금 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담당자인 홍성농협 박제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농협으로 발송했다.

6.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2010. 11. 26)

충남개발공사가 농협으로부터 도청이전 신도시 토지보상 차입금의 이자율과 거래 약정서, 홍성농협 지부장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하자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에 본 의원에게 농협 관계자가 전화를 하여 참고 인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묻고 본 의원이 대출 이자율에 관한 약정서에 관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자 대환 수수료 19억 1200만원을 본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은 후에 감면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농협 관계자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하자 농협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농협 담당자로부터 이자율 인하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충남개발공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세심한 지적과 각종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충남개발공사도 만기일인 2011년 6월까지 현 이율을 적용받았을 것이고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토지보상비는 신청사가 이전하는 2013년도 이후에 토지분양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2011년 6월 만기일에 상환을 못하고 1년씩 두 번을 연장하였을 것이다. 또한 농협은 충남개발공사에 이자율 조율요구가 없었다면 이자율을 낮춰 주지 않았을 것이며 본 의원의 요구자료와 농협 관계자 참고인 출석 요청 등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과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당일 아침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충남개발공사 직원이 자료를 건네주며 지난 11월 17일에 농협으로부터 대환 수수료 19억 1200만원을 면제받았으며 이자는 공기업 최고 우대금리로 적용토록 약정을 했다는 통보를 했을지 의문이다.

이것으로 볼 때 충남개발공사는 농협에서 차입한 평균 6.35%에서 4.3%로 2.05%나 금리가 인하되어 대출 만기일인 2011년 6월 4일까지 잔여기간 약 18억 5000만원과 중도 상환 수수료 19억 1200만원을 합한 37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다.

7. 2011년도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내용

2011년도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시 김광배 사장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문 의원님의 농협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셔서 저희 개발공사가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초선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섰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강조하고 싶은 점

일선의 공무원들은 도정 운영시 내 집 살림하듯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도의회는 철저하고 세심한 자료의 분석과 면밀한 분석과 통찰을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퓨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추진(기대) 성과

충남개발공사가 지불해야 할 대화 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약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음에 큰 보람을 느 꼈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농협관계자를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당시의 이자율 및 환율, 변동금리 등에 대하여 확인시키고 농협에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을 감소하는 데 약정 당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이번 선례를 토대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천안시 행정감사에 적용하여 천안시가 농협에 차입한 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의 이자를 따져 농협으로부터 이자를 감면받아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추후 타시·도에 유사한 사례에 관리와 감독, 관심을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타

고정금리를 변동 금리로 적용받으려면 국가적인 금융위기나 급격한 국고채 수익률의 변동이 있어야 변동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정황 설명과 농협 관계자의 인정을 받아내야 이자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국가적 금융 위기로 이자가 계속 상승할거라며 고정금리 6.35%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했고 농협 관계자도 그 당시 국가적 금융위기에 개발공사에 대출도 최선을 다한 것이며 고정금리 결정이 옳았다는 대변을 할 때 예외 조항을 서로 열심히 항변하는 것을 듣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거래 약정서의 이자율 변동 사유를 인정해 처음 의도한 이자 감면의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



| 김 현 섭 의원 |

추진과정(기간)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012년 연말 고교졸업생 취업지원을 촉구하는 민원인을 만났다. 그 분들은 공 공기관부터 고교졸업생 취업을 확대해야 하고, 취업현장에서 고교졸업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 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저는 2013년 연초부터 전라북도 투자기관 고교 졸업생 채용 현황을 조사했 고, 고등학교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면담했다. 특히, 고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적성과 특성을 살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해주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적성을 살리는 학습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조례제정이 분명 고교교육을 정 상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격려해줬다.

추진일정

- 2012, 12, : 고교졸업자 취업 지원 촉구 민원인 면담

- 2013. 1월 ~ 3월 : 고교 학교 관계자 면담, 전북도 출연기관 고용실태 등 조사

- 2013. 04. 05 : 조례안 발의

- 2013. 06. 17 :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 2013, 06, 25 :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 조례 제정

- 2013. 07. 12 : 전라북도 조례 공포

추진동기 및 배경

우리 사회는 학력차별이 만연해 취업과정에서 고교졸업생들의 자괴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력보다는 학력에 따른 인력채용이 관행화되어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진학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력차별 논란을 앞장서 해소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연, 투자 기관 등에서 고교졸업생에 대한 채용이 여전히 미흡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졸업생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례유형

조례 제정

추진내용(조례 핵심 내용)

전라북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강조하고 싶은 점

학력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 등에는 일정 수 이상 고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고 졸취업자들에게도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력차별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추진(기대) 성과

질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전라북도 투자·출연기관 11개소 정원 1135명 중 10%를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25개 기관에서도 고졸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노력할 것을 제도화했다.

특히 본 조례제정으로 위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청과 관련이 깊은 법인과 단체 20개 기관에서도 고교졸업생 취업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문 확대는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병리현상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자신한다.

조례 제4조에 고교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다양하게 부과해 관련 성과가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점도 뜻 깊게 생각한다. 즉, 도지사에게 고교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고용촉진 재정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교육기관과 협력관계 형성 등의 책무를 부여해 고교졸업생 취업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앞서 말한 전라북도 투자출연기관 정원 1135명 중 최근 2년간 채용한 고졸사원은 9명에 불과했다. 공공 기관에서부터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보며 저 자신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조례가 시행되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고졸자 취업확대가 예상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조례제정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고교교육과정의 정

상화와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런 조례는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점과 고교졸업자 우선채용이후 조직내부에서 관련자 소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조례제정 이후 저는 2012년 12월 저에게 관련 민원을 처음 제기한 주민을 만났다. 그 분들은 조례가 제정되어 고맙다며 취업생들이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저는 앞으로 관련 조례가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최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와 부채감축 조치 등으로 인해서 채용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고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고졸자의 실질적인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전방위적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조례에 명시된 채용대상기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규정된 대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별첨】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cdot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의회

-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Ⅰ기도서의원Ⅰ

추진기간

2010년 7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사례유형

주민참여 분야

추진동기 및 배경

지역(순천)의 발전 및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요구하는게 의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제·개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 및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활동은 물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지역개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추진내용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 교육행정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도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교육화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 ※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9건
- ①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3, 10, 21)
- ②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 4. 9)
- ③ 전라남도 농어업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 조례안(2013, 2, 27)

전라남도의회

- ④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11, 5)
- ⑤ 전라남도 교육행정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1, 11, 4)
- ⑥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2011, 4, 4)
- ⑦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 3, 9)
- ⑧ 전라남도의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0, 10, 12)
- ⑨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 9, 28)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2건)과 결의안(4건)을 대표발의하여 정부의 관심 촉구와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 대표발의 건의안(2건) 및 결의안(4건)
- ① 남해고속도로 영암 ~ 순천간 순천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2013. 5. 13)
- ②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2, 6, 4): 위원장
- ③ 지방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2011. 7. 5)
- ④ 전라남도교육청 산하지역 교육청의 권역별 기능거점 운영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안(2010, 12, 20)
- 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0, 7, 21)
- ⑥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2010. 7. 19)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기를 조성하고자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 ※ 도정질문(3회)
- 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3, 10, 17)
- · 도내 학교 시설물(책걸상 등)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 전남지역 각종 박람회 조직위 무원칙 운영 이사회 구성 문제 등 지적
- ②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2, 10, 24)
- 전남도립대학 설립목적 충족을 위한 전라남도의 대책과 앞으로 추진방향
- 전남교육감 소속기관의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는 법률과 국가시책에 맞는지 지적
- 순천신대지구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적
- ③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5, 1)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 전남도의 대책
- 교과부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예산 증액 등 질의
- 외국인 학교 설립이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회의적인 이유
- ※ 5분 자유발언(3회)
- 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3, 21)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공직자, 도민 홍보협조 당부
- ②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1, 10, 31)
-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편성 강력 촉구
- ③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0, 9, 15)
- · F1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최선의 노력 촉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2013. 4. 20 ~ 10. 20) 특위위원장으로 박람회의 성공개최 및 사후관리 지원활동을 위해 순천만의 여건과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습득과 사후관리 방안 모색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관람객 400만명 목표 달성 등 성공개최에 기여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의 국비 지원, 안전한 학교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무상급식 대상 확대,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등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실시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전남동부권 산업단지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에로 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다. 기타, 의원 연구단체인 '공유재산 연구포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강조하고 싶은 점

지금까지 순천시민에게 다가서는 현장 의정활동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차별없이 챙기고,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발품을 아끼지 않았다. 순천은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의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순천시민 모두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협력의 에너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인 도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제·개정,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시민불편사항 해소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는 등 고향 순천 발전을 위해 큰 일꾼, 큰 머슴으로 남겠다.

추진(기대) 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홍보활동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여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는 물론 중국 등 외국 방문을 통해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박람회 현장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애로사항 을 발굴·해결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또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시에 교육도시 순천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순천 유치"와 지역학교 현대화 시설 확대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온 점이 보람으로 남는다. 그리고 지방의원 자체가 보좌관이 없는 실정으로 대민접촉부터 정책제안까지 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는 실정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지금까지는 집행부 행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위주의 의정활동에 집중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와 내부개혁이 이루어 지고있어 앞으로는 정책제시 위주의 활동으로 변화하겠다.

즉,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안 제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한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간 적절한 견제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기타

지난해 5월달 풀뿌리 정치에 얽힌 이야기를 엮은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의 수필로 "2013 현대문에 제69회 추천문학상" 수필부분에 당선되고 현대문예 신인상을 받았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입성하기까지 선거라는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격으며 살아온 지 벌써 10여년 이상이 흘렀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소중한 순천 시민들을 많이 만나뵙고 그 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의정활동 혁신을 통한 지방의원 역할의 새로운 인식과 전환



| 박 병 훈 의원 |

추진기간

2010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사례유형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쇄신, 정책연구,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동기 및 배경

지역민과 늘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관행과 비합리적인 관습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의원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증명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왔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추진내용

- 1) 창의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 상임위와 예결위의 조화를 위한 기준제시와 실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제1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예결위원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교육, 농촌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경북도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또한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기관은 그동안 도민과 도의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보고 예산 심의시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상임위들의 결정이 경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두었다. 때문에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도 경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본의원이 이끄는 예결위는 꼼꼼한 심사를 위해 개원이래 처음으로 휴일에도 예산 심사에 나섰다는 것이 널리 회자되었는데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증액에도 나서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예년에 계수조정소위 막바지에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됐던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실제로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실제로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거쳐 상호 이해하에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아직도 보기 드문 일로 평가받고 있다.

·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동료의원들의 공로패 수여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들과 함께 도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예비비를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일 그리고 대신에 구제역과 관련된 예방과 처리문제에 대한 매뉴얼작성을 통해 누가 일을 하더라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 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던 일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위원장을 맡은 시기의 예결위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로부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 초선의원들의 경우 질문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점들을 높이 산 동료 예결위원들은 이례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 공로패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2) 의정활동 쇄신의 기틀을 마련한 합리적 운영위원회 운영

· 관행을 또 깨트리다

의정활동의 오랜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본의원이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당선되면서 "후반기 의정방향을 민주적소통문화 구축에 있다"고 밝히고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자세로 "의회다운 의회, 생동감있는 넘치는 의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후반기가 출범하자마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 1주일 만에 의회운영위원들과 함께 후반기 도의회 운영방향을 같이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민주적인 의회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도의회 연석확대회의 정례화

경북의 주요현안들을 의회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의정혁신을 위한 의정중점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연석확대회의를 정례화하였다. 연석확대회의를 통해 현안과제를 집중점검하고 의회차원의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의회를 시스템화하는 기틀을 잡았다. 이와 같은 연석확대회 개최는 주요현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던 관행을 깬 것으로 매우 이례적

이라 평가받았다.

· 실명책임제.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으로 의회운영의 재정립

일반 상임위활동과 도정질문, 현장 의정활동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방향이 재차, 3차 거론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의정활동쇄신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 하도록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공무원의 실명책임제를 추진하고 전체 의회 회기를 5일간 더 늘리는 등 운영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실제 박병훈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운영위원회가 발의안 조례안만 하여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이르고 있어 그와 같은 혁신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미흡한 점을 없애고 지적사항의 처리상황을 지속관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하였음은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적 의원보좌역량 강화

도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의정활동보좌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들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제 경북도의회에서는 의회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좌가 비회기기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바, 바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미니(Mini) 민의의 전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후반기 들어 민의의 전당은 5회가 개최되어 모두 330여명의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2년 12월의 문화활동을 포함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2013년 5월과 10월에는 각각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충남도의회, 전남도의회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르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또 한번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 3)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민밀착형 조례제정에 앞장
-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어서 2012년 10월에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하였다.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로컬푸드 도의원'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2013년 5월에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전문기관을 쉼터운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본의원이 이끄는 경상북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가 의원연구단체활동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발의된 조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경북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헌혈의 집과 고정헌혈자원 부족 등으로 헌혈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013년 10월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헌혈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헌혈 활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경상북도 중소기업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

경북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 애로계층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일정한 기준에따라 선정된 청년미취업자 및 취업애로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취업지원대상을 청년 미취업자 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애로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어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4)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바쁜 의정활동이지만 평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에 노력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이미 수료하여 학구열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도의회 내의 의원연구단체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지역의 크고 작은 전문토론회에 참석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산학협력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 등에 강사로서의 열정을 보이는 등에도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13년 2월에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한국 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박근혜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국회법 제1조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 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똑같은 주민의 대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들고 현실성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건의되기도 하였다.

강조하고 싶은 점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산심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할 정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반 기에는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지방의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가 하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적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권리인 조례제정에도 단연 앞장섰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노력은 평소 연구하고자 하는 성실과 열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회복지관련 문제와 현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직접 이끌면서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제시와 조례제정에 앞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도내 주요 정책현장마다 빠짐없이 나타나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부지런하고 끈기있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고 난 이후부터는 오로지 일을 위해서 무쇠로 만든 사람마냥 하루에도 지역구인 경주와 대구에 위치한 도의회까지 왕복 160km를 하루에도 두 세번씩 다녀가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더 바빠진 탓이기도 하다.

추진(기대)성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9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의원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례입법 발의, 의원연구단체활동을 통한 정책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이 있으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더욱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거쳐 현재는 경북도의 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의장단에 집중되어 있던 의회운영권한을 상임위로 대폭 이전하여 민주적 의회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상임위활동과도정질문, 현장의정활동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방향이 재차, 3차 거론되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집행부공무원의 실명책임제를 추진하고 전체 의회회기를 5일간 더 늘리는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재선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지역구의 주민은 물론선배·동료의원들의 뜨거운 성원과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도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신설 등의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향후 과제 및 제언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각종 참여제도 도입, 자치제도 개선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음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검증 · 견제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이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회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크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환경 변화는 지방의원의 업무를 양적 · 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의정지원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의정지원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의회의 기능 및 위상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통제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로 이어져 그 성과는 바로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4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조례제 · 개정 등으로 경상북도 의회발전에 기여



| 장 세 헌 의원 |

균형발전연구회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추진배경

타 시 \cdot 도의 균형발전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경상북도청 이전에 따른 경상북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창조도시를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함.

추진경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2013.6.27~6.28)를 경북도청 도청이전신도시와 원주혁신도시 일원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추진과정

경북대학교 김정호 교수님의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함.

특이사항

현장방문으로 원주혁신도시(LH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등을 방문하여 개발현장을 견학함.

추진성과

창조도시가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되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성공도 혁신을 창출하는 창조도시의 관점에서 가능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창조도시가 될 때 창조적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통하 여 혁신을 창출하게 됨.

성공적인 창조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리더십의 발휘는 마치 엔진과도 같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능력(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리더십이 요구됨.

도시민의 창조성과 감성을 높이는 도시 특유의 창조환경과 기반조성, 제도적 체계구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창조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조도시가 조성되게 될 것임.

보람 및 애로사항

의원연구단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게 되고 연구단체에 애착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함

사회안전망연구회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추진배경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다각적인 보호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4대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코자 함.

추진경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 세미나(2013.7.8~7.9)를 경남 창원시, 남해군 일원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추진과정

한국여성CEO센터 조현순 관장님의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함

특이사항

시설방문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남남숙의집과 지역사회안전망 마을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을 견학함.

추진성과

가정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관망자적 자세가 아닌 내 이웃 내 가정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위한 정책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함.

보람 및 애로사항

의원연구단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가정폭력 해소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펼쳤고 연구단체에 애착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함

임업발전연구회 「국가 산림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추진배경

임업발전 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국가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임업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경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 세미나(2013.5.20~5.21)를 충청남도 태안군, 세종시 일원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추진과정

대구한의대학교 임원현 교수님의 「국가 산림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국가 산림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함.

특이사항

현장방문으로 태안군 천리포수목원과 세종시 충남산림박물관 등 산림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을 견 학합

추진성과

고도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자칫 피폐해지기 쉬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 산재한 산림을 통한 휴식과 여가활동의 장 마련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전체면적의 71.7%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경북의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성과가 있음.

보람 및 애로사항

의원연구단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산림정책을 이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연구단체 에 애착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함.

자연공원생태연구회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추진배경

자연공원생태연구회에서 추진중인 자연공원 관리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팔공산 도립공원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코자 함.

추진경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공원생태연구회 토론회(2013.1.24)를 경상북도의회 의회별관 도민의 방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추진과정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소장으로부터 팔공산도립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함.

특이사항

현장검검으로 팔공산 도립공원관련 개발사업 현황 점검 및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을 견학함.

추진성과

팔공산 도립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팔공산 도립공원 관련 개발사업 현황 점검, 국립공원 승격 방안 토론 등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보람 및 애로사항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도민과 도의원 님이 합심하여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

조례제 · 개정

1.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 운영조례 개정 - 대표발의(시상제도 도입)

추진배경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연구에 기초한 입법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증가에 따라 심도 깊은 정책연구와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상제도 도입을 통한 의원연구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연구의지와 성과 제고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

추진경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간담회(2013.6.27)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강화를 위한 시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추진과정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간담회(2013.6.27)를 거쳐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대표발의(2013.9.27)하여 임시회(2013.10.10~10.24)에서 개정안을 처리함.

특이사항

현재 4개 의원연구단체 운영

균형발전연구회(연구주제: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

사회안전망연구회(연구주제: 사회안전망구축 정책연구)

임업발전연구회(연구주제: 산림비지니스 및 임업발전 정책연구) 자연공원생태연구회(연구주제: 팔공산 등 자연공원 정책연구)

추진성과

금년 하반기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연연구단체 심의 · 의결을 거쳐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임.

보람 및 애로사항

의원연구단체에 시상을 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게 되고 연구단체에 애착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임.

2.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이유

경상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기술경 쟁력 제고로 지식재산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참고로 전국 지식재산센터는 31개소이며, 우리 도는 3개소로 광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 제정 내용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의 종합적 시책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 재산 진흥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담부서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문인력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 분쟁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경상북도지식재산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 북도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소관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자료제출, 비밀보호,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3.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 제정 내용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적용대상을 규정하였다. 안 제4조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시책 시행과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시·군 및 공기업 등에 권고 지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라



| 황 이 주 의원 |

추진 배경과 경위

- · 경북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최근 5년간 한 달에 한 번꼴 정지
- · 원자력 사업,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무관심
- -정부, 한수원 무관심에 시민단체 선명성 부족 ⇒ 원전 출입 14년 기자출신, 의정활동 으뜸 과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정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이 25건(신고리 11건 포함), 한빛(=영광)원전 15건, 월성원전 11건(신월성 4건포함), 한울(울진)원전 9건 순이다. 국내 원전 1호인 고리원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672건이나 가동을 멈췄다 한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 울진과 영광, 고리가 각각 6기, 월성 5기로 국내 전력 생산에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은 국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다. 또 구소련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 한번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그 규모나 피해의 정도는 여느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원자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나 한수원측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거나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기준치 이하다'라는 식으로 무사안일로 일관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구해 나서야 할 국회는 국정감사 때 인기에 영합해 한건주의 식으로 반짝 관심을 보이는 게 전부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하다. 반핵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때때 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 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탓인지, 아님 시민단체 들의 선명성 부족 탓인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원자력사업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역할은 그야말로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집행부 공무

원들에겐 관심 밖의 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광역의회인 시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아예 없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책 자문을 해 줄 보좌관조차 한 명 없으니 달리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가량이 우리 경북도에 있는데다 석유나 천연가스 등 별다른 에너지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원자력발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기에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섰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중 하나인 매일신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출입만 14년 한 기자출신이며 한울원전(울진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등 원전의 주요 시설이 출입처였다. 그래서 원전의 현장 문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고 있다.

언론에 몸담고 있을 때도 울진원전 폐기물 임시 저장고 빗물 누수 사고 등 원전에 관계된 크고 작은 기사는 본인의 몫이었다. 특종도 여러 번 했었다. 국감 때면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이 관련 기사와 자료를 귀찮을(?) 정도로 요청할 정도였다. 또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을 세 차례나 역임할 만큼 원전 현장 사정을 잘 안다.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일본 등 외국의 원전 시설들도 수차례 둘러보고 온 경험도 있다. 그랬기에 의회 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목소리는 유난히 컸다. 그래서 의정활동 으뜸 과제가 바로 원전의 안전성 강구와 원전 관련 사업 지역 유치다.

추진과정

- · 5분발언 도정질문 11회 중 8회 원전 문제 언급
- -원전 마이스터고 설립, 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시공, 비상방재구역 확대, 주택내진설계 강화, 원자로 위치변경, 지진해일 대비책, 부품연구원 유치 등 주장
- -후쿠시마 사태 때 일본 달려가
- -서울MBC 9시 뉴스데스크 특종 보도⇒문제제기에서 대안제시, 조례 제정까지

그동안 8번의 5분 발언과 3번의 도정질문 등 모두 11차례의 본회의 발언 기회 중 무려 8차례나 원전에 대해 언급했다. 의정 생활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원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전 현장의 각종 현안에서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의 대안제시까지 원전의 전 부분을 총망라 해 관계 공무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김관용 지사에게 건의해 도청에너지 담당공무원, 원전이 있는 경주와 울진 공무원과 함께 후쿠시마와 관계 시설을 둘러보는 등 한 발앞 선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주장한 원전의 현안들.

1. 원전 인력양성 주장-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 강조

원전의 고장 정지 및 설비 관련 고장에는 운전원 조작 미숙 등 인적 실수도 한 몫을 한다.

1978년 이후 36년간 전체 원전 고장 사고 672건 중 인적실수가 125건이나 돼 전체 비중의 18.6%나 차지하는 만큼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이에 원전 마이스터고 설립을 주창했다. 울진원전 인근에 평해 공업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이 학교를 원전 설비와 정비 운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원전 마이스터 고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시군 몫의 지역개발세 미지급분 찾아내

경북도가 경주시와 울진군에 돌려주어야 할 지역개발세 미지급분을 찾아냈다. 지역개발세는 도세로 경북도가 울진과 경주 월성 원전으로부터 kw/h당 0.5원을 거둬들여 이중 65%는 이들 기초지자체에 돌려주고 나머지 35%는 경북도가 직접 사용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 65%의 몫, 83억원을 제 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던 것을 찾아냈다. 또 정부가 공모한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용 원자로 사업의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3.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 건축 문제 제기

한수원이 울진원전의 증기발생기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체하면서 뜯어낸 폐증기발생기를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증기발생기는 핵연료 주변에 위치하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 그 힘으로 터빈을 돌게 하는 핵심 부품이다. 증기발생기는 1대의 크기가 길이 20m에 지름 6m, 무게가 300t이나 되는 대형 폐기물. 문제는 불법보관소 시공이 아니라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데 있다. 그런 만큼 이것을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하는 것도 어렵고, 저장고의 보관 만료 시점도 없어 결국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점을 들어 대책미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 위치 변경에다 연약지반 설치 문제

연약 지반에 의한 원자로 위치 변경과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신울진 1, 2호기 공사에 들어간 원자력측은 원자로가 들어설 부지에 연약지반이 발견되자 당초 설계 위치에서 바다 쪽으로 50m 이동해 착공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밝혀냈다. 사전 지질조사때 연약 지반대를 찾아내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안전성을 담보 받는 게 아니며, 오히려 지진해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2011년 3월 30일 서울MBC 9시 뉴스데스크에 특종 보도돼 한수원측이 안전 설비를 구축하는 돼 크게 기여를 했다.

5. 원전 관련 기업 유치 미흡 주장

2011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이 국내 가동 원전 20기 중 50%에 해당하는 10기(울진 6기, 경주 월성 4기)를 보유하고, 또 국내 원자력발전량의 49.5%를 점하는 등 우수한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도 원전 관련 기업이나 유치에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기협회(KEA)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따른 전국 원자력품질보증업체는 모두 203개로 이중 경남 부산 울산을

잇는 동남권에 80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71개 등 동남권과 수도권에 대거 몰려 있다는 것. 경북이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도 더 후순위로 밀려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 일반 주택 내진설계 도입 주장

제246회 임시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커지는 지진과 도내 내진설계 대비책에 대해 묻고 주민들의 일반 주택 증·개축 시 내진설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개발세로 지원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7.비상방재구역 확대 및 지진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 주장

일본 대지진과 관련 정부가 설정해 놓은 국내 원전 지진 안전 설계값(0.2g)은 미국의 설계값을 반영해놓아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만큼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현재 8km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 방재구역의 범위 확대도 정부 측에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배가 높은 0.4g로 설정해놓고 있으나, 설계값 이상의 규모로 발생한 일본 지진에서 보듯 이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이며, 또 "현재 우리 정부가 원전 방사능 누출 범위를 8km 정도로 보고 비상방재구역을 이같이 설정해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km 바깥 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실적으로 비상방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8 원전 주변 질병 역학 조사 요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 용역 연구소측과 반핵의사회 측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자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경북도가 산하 의료원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역학연구소측이 지난 199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20년 동안 울진원전 등 4개 원전지역을 대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5km 이내 거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10만명당 61.4명으로, 30km 밖 거주 여성의 26.6명에 비해 2.5배 높게 나왔다는 것. 이를 두고 서울대측은 의미 없는 수치라고 주장하고 반핵의사회측은 원전으로 인한 결과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9. 원전 사고 대피소 허점투성이-친환경 대피소 신설 역설

경북도가 400km가 넘는 동해안 4개 기초지자체 해안에 모두 292개의 대피소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대피안내판은 고작 145개에 불과하는 등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해안의 지형은 지진해일 발생시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V자형 만, 또는 하천 하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지구가 확정된 곳이 상당수 있다는 것. 해양경찰관들도 대피소를 모르고 있는 만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주민대피를 지정하고 또 유도하는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해라고 촉구했다. 또 지진 해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대피장소를 지정하거나 안내판 설치 간격을 너무 멀리 해 놓아 이동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0. 원전부품연구원 유치를 주장

원전 안전구축을 위한 연구기관을 경북도가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에 따른 설립 재원도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200억원 상당의 지역개발세로 충당하자며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 로 하는 이 세금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10년 후 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만 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추진 성과

1. 원전 마이스터고 설립 주장→설립 완료

울진에 있는 평해공업고등학교가 2011년 연말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았다. 원전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목표인 이 학교는 지난 1년을 준비해온 끝에 올 3월 첫 신입생을 입학시켰다. 원전산업기계과와 원전전기제어과 2개 학과에 정원 80명을 선발했는데 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한수원 등 10여개 업체와 취업 관련 협약을 맺었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국도비 200여억원으로 교육시설에 투자해 원전 전문고로서의 변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2. 지역개발세 지원금 미지급→제도 개선 완료

본인의 지적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문제를 인식, 곧바로 미지급분 83억원을 교부했으며, 향후 분기별로 세금 징수와 동시에 바로 기초지자체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바꿨다.

- 3.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 건축 문제→원전지원금 증액 고려
-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 건축에 대해서는 울진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또 폐기물 보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울진군이 정부 한수원측과 협의한 후속 원전 건설에 따른 지원금에 이를 반영키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 4.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 연약지반 설치 문제 →보완 조치

연약 지반에 의한 원자로 위치 변경과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기에 따라 원전측이 이 일대에 인공암반을 조성하는 등 보강작업에 나섰다. 원전측은 변경한 위치에 콘크리트 12만 루베를 타설, 안정 지반을 조성했다.

- 5 원전 관련 기업 유치 미흡 주장→추진 중(미흡)
-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원전 관련 부품 회사들을 접촉해 본사나 지사 이전 등에 대한 협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부수적으로 회사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 제공은 물론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하고 있다.
- 6. 일반 주택 내진설계 도입 주장→생존공간 조성 사업 추진

2012년부터 지진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일반 주택의 내진설계비 지원을 대신해 화장실을 생존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지진 발생시 주민들

- 이 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조하는 것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4억원으로 80동을, 올해는 6억원을 들여 12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7. 비상방재구역 확대 및 지진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 주장→협의중(실적 미흡) 경북도가 나서서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들 기관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호복 3만170벌과 설량계 240대를 구입하는 등 원전 사고에 대비해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 8. 원전 주변 질병 역학 조사 요구→검토중(실적 미흡) 원전 주변 질병 역학 조사를 경북도 산하 의료기관이 맡아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경북도가 공 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가 직 접 이 사업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9. 원전 사고 대피소 허점투성이-친환경 대피소 신설 역설 →검토중 원전의 지진과 지진해일,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친환경 대피소 신설 문제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경북도가 해법 찾기에 고민하고 있다. 또 도정질문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동해안에 설치된 안내간 판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하는 한편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 10. 원전부품연구원 유치 주장→검토중 원전부품연구원 유치 역시 원전 관련 기업 유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 롯데유통관광단지 투자비 정산과 관련한 1500억 예산절감 사례



Ⅰ공 윤 권 의원 Ⅰ

사례 추진 배경

경남도에서 추진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경남도의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며 초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정산과 관련해 롯데라는 대기업과 2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사업이다.

경남도는 2011년 6월 투자비를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안을 상정하였으며 그 당시 경남도의 총 정산비용은 1379억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정산금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도의회에서 부결시켰으며 이후 도의회 차원에서 투자비 검증단 구성을 통한 정산비율 논의를 다시 하였고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2013년 7월 최종 정산시에는 2882억을 롯데측으로 받아내 1503억을 더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애초 경남도는 롯데라는 대기업에 밀려 지분정산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본인을 비롯한 도의회의 활약으로 경남도 예산 1503억을 더 확보하게 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본인을 비롯한 경남도의회의 성과이자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의 대단한 성과라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적인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업 현황

1. 사업명;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2.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5-5번지 일원

3. 면적: 878.415m²

4.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지사

5. 민간개발자: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건설

6. 사업기간: 1995~2013

7. 총 투자사업비

당초: 1조 2707억(기반시설 2926억 상업시설 9781억)

변경: 1조 3950억(기반시설 4169억 상업시설 9781억)

- · 1단계 (2007.1.1 ~ 2008.12.31) 아울렛물. 물류센터(현재 완료)
- · 2단계 (2009.3 ~ 2010.12.31) 시네마. 스포츠센터
- · 3단계 (2011.1.1 ~ 2013.6.30) 테마/워터파크, 콘도, 호텔, 마트. 숙소 등

사업 경과

- · 유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경남개발 연구원): 1995.06
- · 민간개발자 선정(롯데쇼핑 외 2) 및 협약체결: 1996 06
- ·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1996.12
- · 실시계획 승인 및 기공식: 1998.02
- · 농산물유통센터 개장: 2005.11
- · 아울렛몰. 물류센터 개장 : 2008.12
- · 투자비 정산 1,379억에 매각 위한 의회 상정(투표결과 부결): 2011.06
- · 투자비 검증단 구성: 2011.07
- · 김해 관광유통단지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2012.01
- · 워터파크 착공(2014.4 개장예정): 2012.03
- · 아울렛몰 증축(시네마) : 2012.05
- · 투자비 협상단 구성, 운영(협상 4차례 개최 : 2012.10
- · 상임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정산안 보고 : 2013.3
- ·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해관광유통단지 특혜 의혹 기자회견: 2013.5
- ·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해관광유통단지 감정평가액 관련 기자회견: 2013.7
- · 김해관광유통단지 최종정산 금액 2.882 억으로 협상 완료 : 2013.7

특이 사항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롯데라는 부동산 재벌그룹과의 정산액 싸움에서 본인을 포함한 경남도의원의 활약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특히, 이번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경우는 그 성과가 1503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액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남도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다시 쓰여질 것이다.

도의원들의 업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번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도의원의 활약에 따라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시킬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협상경과 및 애로사항

김해 롯데관광유통단지는 본인이 2013년 1월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되고 나서 거의 6개월간 매달린 사업으로 롯데라는 재벌그룹과의 힘겨루기와 비협조적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뚜렷한성과가 있었던 사안으로 약간의 감회를 적어볼까 한다.

롯데유통단지는 1996년 롯데측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후 무려 17년이나 지연시켰고 그 동안 땅 값의 차익만 해도 엄청났다. 이 땅값의 상승분 중 초기 투자금 비율에 따라 경남도와 롯데가 나누어서 평가한 후 경남도의 평가 금액만큼 롯데가 경남도에 현금 지급하면 지분정산이 마무리 되고 소유는 롯데로 넘어가게 된다.

2011년 6월 경남도에서 롯데유통단지 총 지분 중 경남도의 지분이 27.7%이고 총 평가액이 1379억으로 롯데에 매각하겠다는 매각안이 올라왔다. 당시 경남도의회에서 지분이 너무 작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에서 매각안을 부결시키면서 이후 투자비 검증단 등을 구성하여 올 초 37.8%까지 지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올 초 지분율 싸움 막바지부터 본인이 이 사안을 파고들게 되었다. 총 지분정산 금액은 지분율 곱하기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지분율과 감정평가액 두 가지가 정산금액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중심의 검증단이 구성되어 1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가는 시점이었으나 최종 지분 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롯데측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지분율 결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담당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철저히 그 동안의 경과를 점검했으며 지분율 결정과 관련해 점검단과 논의를 거쳤고 경남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도록 수차례 독려하기도 했다. 결국 최종 지분율 37.8%를 확보했으며 이는 2011년 6월 경남도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던 27.7%에 비해 10%정도 경남도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성과였다. 지분율이 결정된 후에는 또 다른 정산금액 결정요인인 감정평가액의 결정이 남았다.

총 정산금액의 결정이 지분율 곱하기 감정평가액이니만큼 지분율 만큼이나 감정평가액이 중요했고 롯데가 지분율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본인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액으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전국적인 부동산 재벌인 롯데 입장에서는 지분율에서 밀린 정도의금액을 감정평가액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을 낮추게 되면 경남도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을 했다. 어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롯데측의 입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고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더라도 최종 금액을 서울의 감정평가협회가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협회가 롯데측의 압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중요한 내부정보를 습득하여 결정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경남도가 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 "롯데측이 감정평가한 총금액보다 경남도가 선정한 감평사의 총금액이 10%이상 많으면 경남도에서 수수료 7억을 감정평가사에 주지 않겠다"는 내부지침을 발견한 것이다. 이 내용은 사실상 롯데측의 감정평가액에 맞추라는 경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압박으로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의적인 조항이었다.

본인은 경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으며 더 많은 정산금액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남도가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롯데측에 유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도지사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롯데측 감정평가액이 6100억이었고 우리측 감평액이 8000억 이상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 조항 하나로 경남도가 500억 정도 날리는 셈이 된다.

"10%이상 차액이 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남도의 내부 조항에 대한 지적은 경남도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업체만이 알고있는 자료였으며 본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당사자들을 만나고 사안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강한 지적으로 인해 이후 경남도와 롯데측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 외에도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의 상임위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과 롯데측에 협조적인 자세에 대해 지적을 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세 차례의 기자회견과 수차례에 걸친 방송과 언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남도와 롯데측을 압박하며 경남도가 더 많은 지분 정산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감정평가 최종결정을 감정평가 협회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는 현장실사를 나온 협회 심사위원장을 김해 관광유통단지 현장에서 만나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경남도민의 관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종 감정평가 액이 롯데측에 유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거의 6개월동안 이 사안에 매달려서 결국 최종적으로 경남도 정산액 2883억을 받아냈다. 7월 26일짜로 롯데측에서 경남도에 입금을 완료했다는 연락이 왔다. 2011년 6월보다 1503억 정도 더 받아내는 성과 를 거뒀다.

훨씬 나이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책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재벌인 롯데를 상대로 기자 회견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것 같다.

특히, 도의원의 경우는 보좌관이 없어 모든 사안에 대해 혼자 해결을 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이 컸던 기억이 난다.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자 밤을 새가며 자료분석을 해야 했다. 그 외에도 하루 100km 이상 운전을 해야 하고 기자회견문 작성, 기자접촉, 현장 방문 등 모든 일을 혼자 해야한다는 것은 상당한 피로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래도 경남도 예산을 1500억이나 벌었으니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했구나 싶었다.

수년 전부터 도의원 보좌관제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 문제와 국민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례 발표를 계기로 지방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며 조속히 보좌관제도와 인사권 독립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복지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Ⅰ이 성용의원Ⅱ

추진기간

2010년 7월 ~ 2013년 10월

사례유형

자치법규제정 분야

추진 동기 및 배경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남도의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이들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여 경남도의 복지 및 문화관광 선진화에 일조를 하고 싶은 열의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노인, 영유아, 청소년, 보훈가족, 다문화가족,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례제정, 현장방문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편견속에서 입양가정이 어렵게 입양을 하고 있는 점, 고령화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 시책 및 관심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 조례 및 노인건강조 례를 발의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의원이 활동한 입법사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조례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추진 내용

- · 의원발의 입법 활동 성과
- 1.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2011.2.17. 제정/공동발의)
- 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정(2011.5.12. 제정/공동발의)
- 3.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2011.8.18. 제정/공동발의)
- 4.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2011.10.13. 제정/공동발의)
- 5.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2011.11.10. 제정/대표발의)
- 6.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2012.1.12. 제정/공동발의)
- 7.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제정(2012.1.12. 제정/대표발의)
- 8.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6.21. 개정/대표발의)
- 9.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 제정(2012.11.1. 제정/대표발의)
- 10.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2013.3.28. 제정/대표발의)
- 11.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정(2013.7.4. 제정/대표발의)
- 12.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2013.9.12 본회의 의결/공동발의)
- 13.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2013.10.1. 제정/대표발의)
- 14.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2013.9.12. 본회의 의결/공동발의)

강조하고 싶은 점

·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본 조례안은 2010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당초 생소한 사업명과 사업 추진 방식에 의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2011년도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1500여명의 환자들이 사업의 간병 혜택을 보았고 경남도에서도 전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과 간병비 부담 경감, 간병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간병사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2012년도에는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48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8550명의 환자가 이용하였고, 2013년도에는 40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6월 현재 4345명의 도민이 18개 병원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결과 2012년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은상),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파급되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이외에 일반 시책으로 서울특별시 등 5개 시도에서 운영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힘입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2013.7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상남도 입양가정지원조례

본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 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양특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으로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시에만 월 15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만13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도내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2013년 3월에 제정되어 경상남도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9100만원이 반영되어 하반기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의 계기로 경남도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등의 도지사의 책무(3조)와 노인 건강증진 기본 계획수립(7조), 노인준비교실 등의 사업추진(8조), 건강진단 및 본건교육(9조), 노인건강증진위원회(13조~19조),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증가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성과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집행부에서 이에 따르는 시책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을 사문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조례들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에서도 적극 시책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싶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경우 2010년 2개소 2병실 5400만원, 2011년 2개소 9병실 10억 4900만원에서 조례 제정이후 2012년 19개소 69병실 48억 2400만원, 2013년 18개소 55병실 40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만 4362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간병사 601명의 고용창출효과도 유발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의 경우 2013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2013년 7월 경상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9100만원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조례 제정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어 전문적인 자료 수집이나 입법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수집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였다. 또한 법률 전공자가 아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경상남도의 경우 도의회에 입법지원 부서에서 의원입법 성안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개인적인 역량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그 분야에 소속된 집단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람을 느꼈던 것은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조례 등 발의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이며, 특히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경우 시책이 2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되어 수혜자가 급증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국비지원 시책으로 선정하여 예산지원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였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정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시행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아직까지도 많은 조례들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선 안타깝다. 결국은 도의원들이 조례를 선심성 또는 표를 의식해 발의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는 개개인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실행가능에 대해 논의를 통해 명목적인 조례로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7명의 정규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보좌진제도가 없어 국회의 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유급보좌진제 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는 다수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의원의 자질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급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선하여 도의원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다시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선 의원 때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경남도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원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도의원이 '갑'이 아닌 '을'이 되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상남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추진기간

Ⅰ조 우 성 의원 Ⅰ

2012년 3월 ~ 2012년 9월

사례유형

자치법규 정비

추진동기 및 배경

현행 조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적극 발굴·개정하여 조례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상이한 조례 정비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추진내용

- · 2012. 3. 15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조우성의원, 인원 : 11명)
- · 2012. 3, 20 : 조례정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및 도교육청)
- 예산수반 규정이 있는 조례, 제·개정 필요성 있는 조례 현황 등
- · 2012. 4. 5 : 조례정비 관련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 · 2012. 5. 30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자문위원 위촉 및 조례정비 관련 업무보고(도 및 도교육청) 청취

경상남도의회

- · 2012. 6. 18 : 조례정비 관계자 합동 간담회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설명, 집행기관 및 위원회별 협조 사항 논의 등
- · 2012. 6. 19 : 집행부에 정비 조례안 제출 요구
- 정비가 필요한 조례 170건(개정 51, 폐지 17, 일괄개정 102) 제출
- · 2012. 7. 1 : 조례정비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7.1 ~ 8.10)
- 도 및 도교육청 조례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
- · 2012. 7. 17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중간 추진 경과 보고
- · 2012. 7. 24 : 정비 조례안에 대한 자문위원 검토 요청
- · 2012. 8. 1: 집행부 정비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검토 요청
- · 2012. 8. 31 : 조례정비 관계자 합동간담회 개최
- · 2012. 9. 14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주요성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2년 3월 구성되어, 약 3개월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조례 담당부서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간 면밀한 검토와 수차례 간담회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수시 제·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사장되거나 불합리한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396건 중 169건(42.7%)을 정비(제정 1, 개정 155, 폐지 13)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개정된 조례 중 제정조례는 1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 괄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개정 조례 155건 중 용어순화, 단순 자구 수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등 단순 경미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 130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제·개정하여 일괄정비하였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14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7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 2건 등 25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목적 달성 4건,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존치 불요 9건 등 13건의 조례를 폐지하였다.

한편, 당초 집행부에서 정비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특별위원회 심사 보류를 요청한 개정조례 16건 및 특위 심사결과 존치 필요가 있는 폐지 조례 3건 등 19건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하고, 향후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정비토록 이송하고,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 정비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7.1~8.10) 기간 중 접수된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등 3건 중 2건은 특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층 검토를 위한 상임위 및 집행부 이송 1건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께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하여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계획 설명, 집행기관 및 위원회별 정비 협조, 향후일정 협의 등을 위한 관계자 합동 간담회, 상임위원회별 순회간담회, 특위 안건 확정을 위한 관계자 합동 간담회, 자문위원(교수, 변호사) 검토, 상임위 검토, 의회 입법정책담당 검토 등 다단계 검토를 통해 철저한 조례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이러한 조례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장시간 방치되고 있었던 점, 기간 만료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었던 점, 조례 규정사항 미이행, 예산 수반 규정 조례 예산 미반영 등 그 동안 집행부의 조례 정비 및 운용에 소홀했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자치법규가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치법규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해 실효성 있게 조례를 운용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1993년(4대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운영 : 6개월) 이후 19년만에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396건의 전체 조례를 전수 조사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특위 활동을 통해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 차별 조항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권리구제와 복리증진에도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청 및 도교육청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함에따라 조례건수가 방대하고, 집행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 검토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관행적인 불합리한 규정 개정 등은 집행기관과 주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시켜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조례정비특위 위원과 집행부 담당부서간 수차례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ㆍ개정 조례를 발굴하고 제ㆍ개정안을 만들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주변 상황 변화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일실하지 않고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면 업무처리에 급급하여 조례 정비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하여 상위법령·개정 내용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새로운 시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조례에 내용이 반영되

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적기에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일괄개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정기적인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타 주요 활동사항

- (1) 우수 조례 다수 대표발의
- ·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 책무 마련
- ·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규정 마련
- ·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시행 규정 마련
- · 경상남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
- ·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위해 노인회 지원 규정 마련
- (2) 한 · 동남아 의회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추진

2013.5.27일부터 5.31일까지 경남도의회 및 베트남 동나이성의회 간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 의회의 공동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경남도의회한·동남아 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써 친선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동나이성 의회를 방문하고 인민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정례적인 상호 방문을 통하여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남도의 국제적인 행사를 홍보하고 경남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경남도의 모태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태광비나를 공식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현장 투어하고, 자긍심을 갖고 더욱 발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호치민 한인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내 한인 사회 및 한인 기업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남도와 동나이성 간 교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고민

2011년 1월 구성된 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으로서,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경남지역이 향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지역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5회 개최함으로써, 도민과 자치단체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Ⅰ강 경 식 의원 Ⅰ

-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워조례 제정(학자금 부담 대폭완화)
- · 노인틀니, 보청기지원조례 제정(노인 1800여명 혜택 누려)
- · 제주문화관광 포럼 대표 활동(공부하는 의회 상 정립)
- · 무기 계약직에 대한 정년연장과 처우개선
- · 생활 체육동호인들의 체육관 사용료 인하
- ·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단식농성 9일(동료의원 중 최다)
- · 향토유산보호조례 제정(향토유산자원조사 3000만원, 향토유 산정비 5000만원 등 반영)
- · 저소득 층 급식비 인상(도내 8747명의 급식비를 각 500원씩 인상)
- · 공공산후 조리워 설치조례발의(엄마들과 저소득층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제공)
-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도입(하도급자 공동도급에 참여)

제주문화관광 포럼 추진기간

- ※ 제주문화관광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본의원이 초대 대표를 역임하면서 2012 9 발족시켜 2013 9까지 총10차례 개최하여 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모임으로 정착시킴
- 1)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회(제1차) : 한국관광의 현안과 제주관광의 미래발전 (2012, 09, 27)

- 2) 관광포럼 자문위원 정책제안 토론회(제2차): 한국관광의 현안과 제주관광의 미래발전(2012, 09, 27)
- 3)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3차) : 외국인 투자 제주 유치의 실과 허(2013, 01, 21)
- 4) 자문위원 정책제안 토론회(제4차)
- 5)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5차) : 1000만 관광객 시대 제주의 동북아 관광허브 전략(2013, 03, 29)
- 6)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6차) : 제주 영상산업의 현재와 미래(2013 04 23)
- 7)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7차) : 제주 축제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2013, 05, 28)
- 8)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8차): 제주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3, 06, 26)
- 9)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년, 제주문화정책의 현실과 진단(2013, 07, 24)
- 10) 관광포럼 정책토론회(제10차) : 중국인 관광객 증가, 그 명과 암은?(2013. 09. 03)

사례유형

- · 우리아이 · 학생들이 행복한 제주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유치원·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중 2014년 예산 321억 9000만원, 고교포함 친환경급식지원 2014년 예산 60억 6000만원, 2012년 3억을 시작으로 올해 6억, 2014년 예산 12억으로 확대됨)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가 실혂
- (개정 전: 저리 1.2종의 저소득층 학생만 일부 이자 혜택, 개정 후: 학자금 대출이자 3.9% 중 저리 1.2종은 100%지원, 취업후 대출상환학자금인 든든 학자금의 경우 50%지원, 1455만 학생개인 부담)
- ·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제정
- (도내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 건강,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 장 운영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 기반 마련)
- 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조례 제정
-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혜택을 줌)

추진동기 및 배경

본 의원은 대학시절 제주대 경상대학 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정당 운동에 뛰어들어 서민들의 높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도의원으로서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바람과 여망에 힘입어 당선됐다. 전 민주노동당 제주도장위원장을 맡아 친환경 급식운동에 앞장서왔고 의회에 들어와서는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무소속의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의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조례 제정, 대학생 학자금혜택, 노인틀니, 보청기 지원,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등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 서민들 편에서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올바른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내용. 강조. 성과. 보람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무상급식 주민발의 제정

제주도내 무상급식 조례는 주민발의로 추진하여 주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무상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등굣길 교통봉사를 하는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왔다.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상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예산이 확대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물론 도내 유치원 및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종 의정활동과 토론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친환경급식의 필요 성을 설파하여 지난해 3억에 이어 올해는 6억원이 예산이 투여되어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급식검수와 유통을 위한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되도록 집행부를 견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 는 성과를 걷고 있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통해 학자금 부담 덜어줘

우리 대학생들은 1천만원 학자금 시대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많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많다. 이마저도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자로 전락한 학생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 중 일부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본의원이 도의원이 되기 이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시절 주민발의 대표로 6655명을 서명 받아주민발의로 제정한 조례이다. 지금도 중앙로 지하상가에 서명 받으러 탁자 들고 땀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조례는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과 총장, 학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 속에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가 수정 제정되면서 저리 1-2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수혜 학생이 적다.

도의원이 된 후 2011년 11월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주민발의 및 개정안 발의 의결하여 일 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모두 소득4~7분위까지는 이자를 100%지원하고 소득 8~10분위도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생들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처음 1회만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이후 자동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이자는 자치단체가 장학재단으로 직접이자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학생까지 50%이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가장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가장 선진 조례이다.

·노인 틀니, 보청기지원 조례 등 각종 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서민과 도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2012. 09월 '제주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발의 및 본회의 의결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기초노 령연금을 받는 제주도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 1800여명이 틀니와 보청기 구입 때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단체우수상

희망공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 전라남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활동

- 전라남도의회 -



| 권 욱 회장 |

추진기간

2010년 7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사례 유형

정책연구기능(연구단체 운영)

추진 동기 및 배경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체 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남은 최근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학교가 75%, 도서벽지 학교가 12.2%를 차지하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도 4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도시 지역과는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전남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9대 전라남도의회 출범과 함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의원 16명으로 '희망 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라는 교육정책 연구모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본 연구회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매번 모임 때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교원평가, 방과후 교육활동,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 육계 현안들을 주제로 선정한 후 관련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라남도의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구성 현황

소속상임위원회	인원수	회원명단	비고
교육위원회	2	권 욱, 최경석	회장 권 욱
기획사회위원회	2	김상배, 노종석	
행정환경위원회	2	곽영체, 조재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3	김인숙, 한승주, 서동욱	
건설소방위원회	4	김효남, 박철홍, 박충기, 송형곤	
농수산위원회	3	김동주, 정우태, 허강숙	
계	16		

추진내용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제2차, 제3차, 제4차, 제6차, 제7차, 제8차 워크숍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특기 적성과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대안학교에 설립을 위하여 대안학교 방문과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전남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학업 중도 탈락생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적응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영역에서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는 인식하에 우리 도의 인성교육중심 특성화학교 설립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주도

제6차, 제10차 워크숍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역의 전략 산업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적응력을 배양하여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교장 공모제 도입. 순환 보직제 개선, 근무 희망자 사전 연수 등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 교원 평가제도 발전 방안

제1차, 제5차 워크숍에서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교원평가에 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근무평정"은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변별력도 낮아 승진자 선발 시 승진자 선별 효과는 있으나 전문성 신장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 방과후 교육활동 발전 방안

제14차 워크숍에서는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신장 및 소질계발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형태와 운영 주체가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제10차 워크숍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 회를 실시하였다. 전남에 있는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5,000명으로 매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논의하였다.

· 정책토론회

제12차 정책토론회는 교육경비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도 의회, 도청 및 각시·군 관계자, 학교장·학교운영위원·교육미래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와 거점형 단설유치원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우수교육기관 방문

제3차, 제7차 워크숍은 대안교육 선진학교인 영산성지고, 늦봄학교,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황을 청취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제8차, 제14차 워크숍은 우수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영어 체험교육시설인 제주도 국제학교와 부산 글로벌 빌리지를 방문하였다. 영어권 국가에 온듯한 실제와 같은 환경과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유아부터 일반인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영어 교육현장을 시찰하였다.

강조하고 싶은 점

· 본 연구회는 지난 3년간 교육계 현안 및 장기발전과제 등에 대하여 워크숍 12회, 정책토론회 2회, 1박

2일 워크숍 3회 총 17회의 연구활동을 했으며, 이런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조례제정 24건, 건의안 4 건. 5분발언 3건,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왔다.

추진성과

· 카페를 통한 정책 반영

포털에서 『교육문화사랑』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알림마당을 통해 워크숍에 발표한 주제와 토의된 내용을 탑재하여 일반인들과 교감하였고, 자료실에는 교육계 최근 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 반영

연구회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현안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회 회원들의 조례 제정은 총 24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과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 결의안을 통한 정책 촉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2년 5월 17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농산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초·중학교에 대한 공동통학구역 운영과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최소기준을 신설한 것으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6학급 미만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전남의 경우 전체학교의 64%에 해당하는 531개 학교가 통폐합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므로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30.1%나 인 상되었으며, 여기에 스마트러닝,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일선 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함으로써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하였다.

• 결의안을 통한 정책 촉구

도교육청 인사행정,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였다.

· 도정질의를 통한 정책 반영

집행기관 운영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구회 회원들의 열정적인 도정질의 실적은 9대 회기 출범 후 23회 176건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주도

연구회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일 것이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공교육 안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남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곡성의 한울고등학교, 강진의 청람중학교가 개교함으로써 인성위주 교육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보성지역과 함평지역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제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외부강사의 학생 교수법이 향상되도록 기여하였으며, 도교육청 방과후 학교지원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숍 일정을 본회의 개회나 폐회하는 오후에 정함으로써 참석률을 높였는데 바쁜 일정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회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교육계 현안이 있는 다양한 교육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지 못한 점과 주 제발표 및 토론 위주로 연구회를 운영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과제 및 제언

앞으로 전남교육은 학생 수 감소로 점점 더 어렵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할 전망이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가 전남교육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이제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재정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의회, 지자체 등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FTA 대응특별위원회 정책 활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Ⅰ 허 창 옥 위원장 Ⅰ

추진기간

2012년 07월 20일 ~ 2013년 10월 현재

사례유형

정책연구기능

추진동기 및 배경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제주의 농수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예컨대, 수입 오렌지의 가격은 FTA 발효 이후 10~15%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한·중 FTA마저 체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제주의 1차 산업이 입을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FTA 극복을 위해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FTA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피해를 검토하고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FTA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활동내용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FTA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13명)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① FTA 발효에 따른 피해 검토 ② FTA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③ FTA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④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⑤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제시 등이며,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구성 이후 지금까지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 2012년 07월 03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 · 2012년 07월 20일 :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결의안 의결
- · 2012년 10월 19일 : 집행부 FTA 현안사항 보고회
- · 2013년 01월 22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순회 간담회
- · 2013년 01월 23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순회 간담회
- · 2013년 01월 24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순회 간담회
- · 2013년 01월 25일 : 서부농업기술센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건의내용은.
- 한·중 FTA 추진 제주지역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요구
- 하우스 빗물 지역 분쟁 발생(물탱크 지원 대형화 요청)
- 감귤과 채소재배면적이 비슷한데 감귤에 지원이 집중됨
- 친환경농업도에 맞는 자재비 및 소포장 사업 등 지원 필요
- 고품질생산 타이벡 3년 사용이 어려움(2년 단위 지원방안 검토)
-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개발 작목과 단지화 필요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노력과 동해피해에 의한 난방사업 확대
- 한 · 중 FTA 협상(4차) 이후 감귤 협의 진행상황 공개
- 1번과 감귤이 택배로 도외로 출하하고 있어서 규격완화
- 농산물 운송에 따른 물류비 지원책 필요
- 대정 마늘 등 지역별 특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제주도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 등
- · 2013년 02월 02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단체협의회 회원과의 간담회
- · 2013년 02월 06일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건의문 전달
- 첫째, 농어업분야의 전·후방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해주시기 바라며, 1차 산업분야전체가 협상제외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최소한 협상제외 품목에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와 주요작물(마늘, 양파, 감자), 수산물(넙치, 갈치, 조기)을 포함 바람.
- 둘째, 우리 농어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양보로 걷어 들인 오렌지 등 수입관세는 전액 자조금으로 산입하여, 해당 피해 농어민

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 셋째, 제주는 섬(島)으로 정주여건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류비용이 육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육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섬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불리한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즉각 시행 바람.
- 넷째, 제주의 면적을 전국 1% 라고 하나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식선단과 외국 불법어선 등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회유하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업금지구역 설정 기준점을 제주도 본도(本島)뿐만 아니라, 부속도서(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를 포함하여 귀중한 수산자원을 미래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제주어업관리단(불법어업지도선)의 창설을 통해 제주도 주변 및 남방해역 보호 바람.
- · 2013년 04월 09일 : 제주시 관할 수산관련 단체장 및 수산인과의 간담회
- · 2013년 04월 11일 : 서귀포시 관할 수산관련 단체장 및 수산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건의내용은,
- 자원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가하는 해녀가 있어 마을어장관리방안 강구
- 한·중 FTA 협상 시 제주해역 주변에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해결
- 고령화로 점점 힘들어 수산물 채취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어장진입로 요망
- 출어하는 데 경비가 60%가 들어가 유류비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조정
- FTA수산분야 지원대책은 지원대상이나 지원 폭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나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요청
- 마을어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황폐화되고 있어 수산분야에 예산투자 확대 등
- · 2013년 05월 09일 : 한 · 중 FTA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용역 보고회 참석
- · 2013년 05월 27일 :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 · 2013년 05월 09일 ~ 07월 05일 : 국회방문 건의서 전달 및 관련사업장 현장방문
- · 2013년 07월 05일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시 활동기간 연장(2014년 6월 30일까지)
- · 2013년 08월 06일 ~ 08월 10일 : FTA 대응을 위한 중국(북경, 청도)자료 수집

- · 2013년 09월 13일 : 국회방문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 제주 감귤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협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감귤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이 감귤과 더불어 지주 산업임을 감안하여 한 \cdot 중 FTA 협상 시 품목에서 제외
- FTA 협상과 별도로 비관세장벽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청정제주의 감귤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입 검역 해제 요청 시 제한조치와 동식물 검역(SPS)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로 규제
-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어종(제주수산물 생산액의 약 80%차지)임을 감안 하여 한 · 중 FTA 2단계 협상 시 초민감품목(양허제외)으로 반영
- 한·중 FTA 체결 이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불법조업)어업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
- 감귤은 농가의 81%가 생계유지를 위해 재배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 오렌지 등 수입관세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관세액 전액을 농어촌구조 개선계정에 전입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
- 제주의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과중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
- · 2013년 09월 23일 : 「한 · 중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기자회견
- · 2013년 10월 11일 : 「한 · 중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

강조하고 싶은 점

FTA 대응특별위원회 업무의 범위는 FTA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피해사업 종사자의 의견수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등이다.

수입개방 확대,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농자재 값 인상,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으며 한·중 FTA는 중앙정부나 찬성하는 측에서도 1차 산업분야에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 유사성, 다양한 기후 등 감귤, 밭작물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한 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은 5억 5600만 달러이며 수입은 32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26억 7000만 달러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전체 본예산과 맞먹는 3조 700억원이다. 또한 감귤인 경우 중국의 재배면적은 2160천ha, 생산량은 2만 5211천톤으로 제주와 비교하면 재배면적으로는 105배, 생산량으로는 43배, 수출량은 무려 213배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 체결된 1단계 협상의 가장 큰 내용은 상품분야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자유화, 즉 관세철폐를 합의한 것으로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될 예정이다.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을 자세히 보면, 상품은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며, 이 중에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시장개방을 하는데,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에 민감품목군은 20년 이내로 점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며.

대표단은 기체결된 한 · 미, 한 · EU FTA의 초민감품목군 크기가 각각 품목수의 0.2%, 0.4%수준이고, 수입액도 0.4% 및 0%로,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응특위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 자면,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는 1200품목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민감 품목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절관세나 TRQ,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지난 9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단계 협상에 앞서 상품분야에 있어 농산물 민감성 반영에 최대한 활용하고, 초민감품목은 국내생산액, 관세율, 가격차이, 지역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추진(기대) 성과

2013년 2월 6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주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2013년 9월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금까지는 경기규칙을 결정한 것이며, 이제 막 시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제주의 1차 산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허제 외 품목으로의 선정은 국내의 타 지역과 경쟁과 상생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띄게 되었다.

2단계 협상은 국내 품목간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통상 교섭단의 대표도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허제외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시킨 만큼 관련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여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 대응특위에서도 국회 대책특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와 정책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제주의 생존전략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양허제외이며, 이를 위해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람 및 어려웠던 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제주시 1위. 서귀

포시 2위이며 그리고 3위는 경북 경주시이다. 그리고 제주의 산업구조(2010년 기준)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은 18.4%로 전국의 2.6%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고, 또한 농가경제 지표(2011년 기준)를 보면 농가소득은 전국 1위이나 농가부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다.

한·중 FTA와 기존 FTA의 차이점은 단계별 협상구조에 있다 즉, 1단계(모델리티) 협상 타결 후 2단계로 진행되며 양국 모두 민감품목 명시적 인정과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도 민간품목으로 인정한다. 제1단계 협상은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하고 제2단계 협상은 제1단계 협상 결과 서면 합의에 따라 제2단계에서 전면 협상에 착수한다.

지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FTA 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2014년 6월 30일까지)한 것이다.

한·중 FTA는 정상회담 이후 척척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속도를 낼 전망이며 한·중 FTA 협상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협상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 대응특위에서는 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그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 활동하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더 잘하라는 격려가 있는가 하면 질책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 이는 한·중 FTA가 제주의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에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제주의 농업을 보호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응정책 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FTA 대응특별위원회」위원 명단

· 위 원 장 : 허창옥 의원 · 부위원장 : 김승하 의원

ㆍ위 원:강경식, 강창수, 고충홍, 구성지, 박규헌, 박원철, 방문추, 위성곤, 윤두호, 윤춘광, 한영호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징대성 시레집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Chairs

발행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발행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발행일 2014년 2월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행정공제회관 803호

문 의 Tel. 02)794 - 0956~7 / 794 - 0974~5 Fax. 02)794 - 0958

디자인/인쇄 지방자치연구소(주) Tel. 02)737 - 8266